

목차

[연말정산(세법)]

| | |
|--------------------------------|-------|
| 세액계산흐름도 | 3~6 |
| 2022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 7~14 |
| 근로소득..... | 15~16 |
| 인적공제종류 및 요건..... | 17 |
| 연금보험료소득공제..... | 18 |
| 특별소득공제..... | 19 |
| 그밖의소득공제..... | 21~22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23 |
| 세액감면..... | 23~24 |
| 세액공제..... | 24~25 |
| 특별세액공제..... | 26~27 |
| 기타세액공제..... | 28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 29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납부..... | 30 |

[근로소득연말정산(흐름도)]

| | |
|------------------------|----|
| 재직자연말정산흐름도..... | 32 |
| ERP10연말정산 자료 흐름도 | 33 |

[근로소득연말정산(사용법)]

| | |
|---------------------|-------|
| 근로소득연말정산항목관리..... | 35 |
| 공통코드등록..... | 36~38 |
| 근로자연말정산입력(관리자)..... | 39~45 |
| 계산식등록, 급여계산..... | 46 |
| 근로자연말정산입력(사용자)..... | 47~72 |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 73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74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75~76 |
|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 77 |
| 연말정산현황..... | 78 |
| 지급명세서전산매체..... | 79 |

ERP10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세법)

근로 소득자의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240만원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보육수당 (월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 액 | 공제액(2,000만원한도)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2.12.31 이전) | 20세 이하 ('02.01.0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 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요건 | 경로우대(70세이상)('52.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지역연金的 연계에 관한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400만원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연300만원~1,800만원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출 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 (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한도 적용)

| 상환기간15년이상 | | 상환기간10년이상 | |
|------------|------------|-----------|------------|
| 고정금리이고비거치식 | 고정금리또는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또는비거치식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그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 : 연 72만원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이하 70%, 5천만원초과 30%)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를 소득공제 (단, 대중교통 하반기 사용액의 경우 80%공제)
-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 : 1+2의 10% (100만원 한도)
 1. 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2.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1억2천만원 해당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금액
-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경우 그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해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각 100만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한도)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한도)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240만원한도)
- ▶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240만원한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소득공제+소득공제한도초과액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과세 표준에 합산

[×] 기본세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40%) - 2,540만원 |
|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42%) - 3,540만원 |
| 10억원초과 | 38,4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45%) - 6,54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이하청년, 60세이상인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90%, 150만원한도) 감면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55%, 초과분30%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이상)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단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단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동일한도)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 특별세액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 연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700만원공제대상한도
- 다만,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제외)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 중, 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없음, 직계존속포함)의 재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대상
- ▶ 기부금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기부금종류 | 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세액공제율 | | 이월공제 |
|----------------|---|--|-------------------|------|
| ①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이하 | 100/110 | - |
| | | 10만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 ②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 × 100%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10년 |
|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②) × 30% | | | - |
| ④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①-②-③) × 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금액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 | | 10년 |
| ⑤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 (근로소득금액-①-②-③) × 30% | | |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세액공제
-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월세액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750만원 한도)의 17%, 15%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감면,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p>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p> <p><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p> |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p> <p>○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p> |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p> <p>○ (좌 동)</p> <p>-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p> <p>○ (한도) 월 20만원 이내</p> <p><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p> |
| <p>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p> <p><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p> | <p><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p> <p>○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p> <p>○ (소득공제율) 40%</p> <p>○ (공제한도) 300만원</p> |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확대</p> <p>○ (좌 동)</p> <p>○ (좌 동) ○ 400만원</p> <p><적용시기>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p> |
| <p>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p> <p><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p> | <p><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p> <p>○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p> <p>○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추 가></p> <p>○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p> <p><신 설></p> | <p><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p> <p>○ (좌 동)</p> <p>○ (좌 동)</p> <p>·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p> <p>○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p> <p><input type="checkbox"/>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p> <p>○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p> <p><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 규정</p> <p>○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p> <p><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p>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p>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p> <p><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p> | <p><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계좌</p>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p> <p>< 추가 ></p> |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p> <p>○ (좌 동)</p>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신설 (2022년 4월 시행)</p> <p><적용시기> 2022.4.14. 이후부터 적용</p> |
| <p>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p> <p><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p> |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인출순서</p> <p>[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p> <p><추 가></p> <p>[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p> |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p> <p>○(좌 동)</p> <p>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p> <p>○(좌 동)</p> <p><적용시기>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p> |
| <p>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3)</p> <p><개정이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p> |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한도 적용 명확화</p> <p>○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p> <p><단서 신설></p> | <p><input type="checkbox"/>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 한도 적용 명확화</p> <p>○ (좌 동)</p> <p>-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p>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p>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p> | <p>□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 <p>○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있는 자 등 ○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10일까지 납부</p> <p>○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 분 소득 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p> <p><신 설></p> | <p>□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p> <p>○(좌 동)</p> <p>○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p> <p><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p> |
| <p>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p> | <p>□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 특례</p> <p>○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p> <p>○ (특례내용)</p> <p>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 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p> <p>○ (적용기한) 2021.12.31</p> | <p>□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p>○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p> <p>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 ② (분할납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p> <p>○ (적용기한) 2024.12.31.</p> <p><적용시기>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p>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p>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p> <p>(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p> <p><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p> |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p> <p>○ (특례내용)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p> <p>○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 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단,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제외</p> <p>○ (적용기한) 2021.12.31</p> | <p><input type="checkbox"/> 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p> <p>-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 행사가액</p> <p>○ (적용기한) 2024.12.31</p> <p><적용시기> 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p> <p>*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p> |
| <p>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p> <p>(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p> <p><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지원</p> |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p> <p>○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p> <p>○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p> <p>○ (적용기간) 적용기한 내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p> <p>○ (적용기한) 2021.12.31</p> |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적용기한) 2023.12.31</p> <p><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및 20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p>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p>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p>(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p> <p><개정이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p> |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p> <p><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p> <p><input type="checkbox"/>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p> <p><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p> | <p><input type="checkbox"/>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p> <p>-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p> <p>-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4.12.31.</p> <p><적용시기> 20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p> |
| <p>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p> <p>(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p> <p><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p> | <p><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p><input type="checkbox"/>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p> <p>-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p> <p>-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p> <p>-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p> <p><input type="checkbox"/> (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p> | <p><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p> <p>- (좌 동)</p> <p>-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적용시기> 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p> |
| <p>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p> <p>(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p> <p><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p> |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p><input type="checkbox"/>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p> <p><input type="checkbox"/> (감면율) 70% (청년은 90%)</p> <p>※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p> <p><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p> <p><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p> |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좌 동)</p> <p><input type="checkbox"/> 2023.12.31.</p>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p>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p> | <p><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직전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p> <p>○ (적용기한) 2021.12.31</p> |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3.12.31.</p> |
| <p>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신설)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p> | <p><신 설></p> |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요건) ① 만 19~34세 ②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③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적용기한) 2023.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p> | <p>□ 월세액 세액공제</p> <p>○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p> <p>○ (공제한도) 연 750만원</p> | <p>□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p> <p>○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p> <p>○ (좌 등)</p> <p><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p> | | | | | | | | | | | | | | | | | | | | | | | | |
| <p>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p> |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p>○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p> <p>○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30%</td> </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r> <td>⑤ 21년 소비증가분 ('20년 대비)</td> <td>1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①~⑤ 금액의 합계액</p> <p><신 설></p> | 구 분 | 공제율 | ① 신용카드 | 15% |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⑤ 21년 소비증가분 ('20년 대비) | 10% | <p>□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p> <p>○ (좌 등)</p> <p>○ (공제율)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상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30%</td> </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12.31.대중교통 사용분)</td> <td>40% (80%)</td> </tr> <tr> <td>⑤ 22년 소비증가분('21년 대비)</td> <td>1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①~⑤ 금액의 합계액</p> <p>○ (소비증가분 공제대상금액) - '22년 귀속분 : ㉠+㉡의 10%</p> <p>㉠ '22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p> <p>○ (공제한도) ㉠+ ㉡의 합계금액 중 연간 100만원</p> <p><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p> | 구 분 | 공제율 | ① 신용카드 | 15% |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12.31.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⑤ 22년 소비증가분('21년 대비) | 10% |
| 구 분 |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신용카드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21년 소비증가분 ('20년 대비)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신용카드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12.31.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22년 소비증가분('21년 대비)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구 분 | 중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input type="checkbox"/>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를 확인된 것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 <input type="checkbox"/> 실명 확인방식 추가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적용시기>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참고

| 구 분 | 중 전 | | | 개 정 | | | |
|---|--|-----|----------|---|-----|-------|-------|
| 2021년·2022년 귀속 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법 §59의4 ⑧) |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1년 기부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p 상향 | | | <input type="checkbox"/> 상향된 공제율 적용 기간을 '22.1.1. ~ '22.12.31.까지로 1년간 연장 | | | |
| | | 구 분 | 공 제 율 | | 구 분 | 공 제 율 | |
| | | | '21년 | '22년~ | | '22년 | '23년~ |
| | 1천만원이하 | 20% | 15% | 1천만원 이하 | 20% | 15% | |
| 1천만원초과 | 35% | 30%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 |
| | | | |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2.12.31.(2개년도)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 | |

2-1.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1.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여, 상여, 수당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급여계산]에서 입력한 급여와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집계합니다. 이외 발생하는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은 [급여계산]과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고용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 중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 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

3.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비과세 설정 방법)

프로그램에서는 비과세되는 소득을 [계산식등록]에서 비과세유형을 선택 등록하여 월별로 처리합니다.

가. 실비변상적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자가운전보조비, 피복비, 위험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나.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국외 등의 건설현장(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등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

※ 참고 - 프로그램 설정 방법

국외근로대상 사원에 대하여 [사원등록-급여기초]의 국외근로여부를 '해당'으로 지정하고 국외근로비과세유형을 선택합니다. 설정 후에 급여계산 메뉴에서 급여를 계산하면 월별로 지급총액에서 100만원(또는300만원)만큼 국외근로비과세로 비과세처리를 합니다.

다.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 참고 - 프로그램 설정 방법

- ① [사원등록-급여기초] : 생산직해당에 '해당'으로, 생산직3천만원이하 여부에 '해당'으로 선택합니다.
- ② [계산식등록] : 과세구분은 '비과세'를 선택, 비과세 유형은 'O01 야간근로수당'을 선택합니다.
- ③ [계산식등록] : 지급항목 중 '월정급여대상'을 선별하여 '해당'으로 지정합니다.
- ④ [급여계산] : 급여 입력 시 월정급여로 설정한 수당의 합이 21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연 초 부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되고 24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자동 과세됩니다.

☞ 월정급여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임
-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됨
- ⑤ 임금협상 결과 1월 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 급여의 계산은 1월 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 2.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3. 월정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수당 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과세특례 (조특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100분의 19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프로그램 설정 방법

- ① 단일세율 적용 : [사원등록-기본정보1탭]에서 내외국인 구분 값을 '외국인'으로 선택합니다.
- ② 외국인단일세율설정 : 내 외국인에서 '외국인'을 선택하면 급여기초탭 외국인단일세율 선택 란이 활성화 됩니다. 급여의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와 19%단일세율 중 선택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급여세액 원천징수 반영방법>>

- 1) 비해당 : 단일세율비해당
- 2) 해당(간이세액포함) : 급여계산세율 19%계산, 연말정산 19%세율적용
- 3) 해당(연말정산) : 급여계산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적용되고, 연말정산 시에만 19%세율적용

4. 세액감면되는 근로소득 (세액감면 설정 방법)

프로그램에서는 세액감면 되는 소득을 [사원등록]에서 감면유형을 선택 등록하여 월별로 처리합니다.

※참고

[사원등록-급여기초]에서 감면유형을 선택하고 감면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매월 과세급여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2014년 이전 입사자는 100%, 2014년 이후 입사자는 50%, 2016년 이후 입사자는 70% (150만원한도) 감면되어 반영됩니다.

2018년이후 청년 입사자는 90% (150만원 한도)로 감면되어 반영 됩니다.

재 신청 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 되므로 90% 대상자는 필히 중소기업감면유형을 선택합니다.

※ 감면 종료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급여계산시 감면적용이 되지 않으며, 해당 종료일까지 감면적용 되어 세액계산 됩니다.

♣ 인적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 요건

기본공제_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1. 본인
2.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3.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1)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 (2) 직계비속자녀, 직계비속자녀 외, 동거 입양자 : 만20세 이하 (2002.1.1 이후 출생)
 - (3) 형제자매 : 만60세 이상 or 만20세 이하
 - (4) 위탁아동 : 만20세 이하 (2002.1.1 이후 출생)
 - (5) 수급자 : 제한없음

- ☞ 동일한 사람에 대해 이중 공제 불가
-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_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1. 경로우대자 공제 - 1인당 100만원 : 만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2.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3.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연50만원 공제
 4. 한부모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
- ※ 단, 부녀자 추가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액이 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 동일한 사람에 대해 중복 공제 가능 : 70세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자녀공제_세액공제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만 7세이상

- (1) 1인인 경우 : 15만원
- (2) 2인인 경우 : 30만원
- (3) 2인 초과하는 경우 : 30만원+2인 초과 1인당 30만원 (즉, 3인인 경우 60만원, 4인인 경우 90만원)
 -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 30 ①)
- (4) 출산·입양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 : 연 30만원 공제
 - 둘째 : 연 50만원 공제
 - 셋째이상 : 연 70만원 공제
 - ※ 부양가족명세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 출산 입양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선택 합니다.

- ☞ 주의 :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불가.
- ☞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하여야 합니다.
- ☞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 소득종류 | |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 |
|--------------------------------------|-------------------------|---|---|
| 종합 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총급여액 500만원 |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 소계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이 된다.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3-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 국민연금외 공적연금

| 공제구분 | 공제항목 | 입력방법 | 공제금액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계산식등록]에 등록된 국민연금, 국민연금정산 | 전액공제 |
| | 국민연금(지역) | 직접입력 | 전액공제 |
| 국민연금외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 직접입력 | 전액공제 |
| | 군인연금 | 직접입력 | 전액공제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직접입력 | 전액공제 |
| | 별정우체국연금 | 직접입력 | 전액공제 |

3-2.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소득공제

| 공제항목 | 입력항목 | 공제금액 |
|-------|---------------------------------------|------|
| 건강보험료 | [계산식등록]의 <건강보험>, <건강보험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 전액공제 |
| 고용보험료 | [계산식등록]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정산> | 전액공제 |

3-3.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

| 공제항목 | 입력항목 | 공제금액 | 한도 | | |
|------------------------|--|--------------|--|--|---|
| | | | 400만원 (주택임차 차입금+주 택마련저 축공제액 합산) | 600만원 (주택임차 차입금+주 택마련저 축공제액 합산) | 1,000~ 1,500 만원 (주택임 차차입금 +주택마 련저축공 제액 합 산)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 원리금상환액 * 40% | | | |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납입액 * 40% | | |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2015년 이후) 10년이상 15년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 | 이자 상환액 전액 | | | |
| | (2003.12.31이전) 10년이상 | | | | |
| | (2003.12.31이전) 15년이상 (2011.12.31이전) 15년이상~30년이상 | | | | |
| | (2012년 이후)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 | | |
| | (2015년 이후) 15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 | | |
| | (2012년 이후) 기타 | | | | |
| | (2015년 이후) 15년이상 기타 | | | | |
| | (2015년 이후) 15년이상 고정금리 이고 비거치 | | | | |
| | | | 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공제액 합산) | | |
| | | | 1,8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공제액 합산) | | |

3-4. 특별소득공제 – 기부금이월분

| 공제항목 | 공제요건 | 입력항목 |
|----------|-------------------------------------|-----------------------|
| 기부금(이월분) | 2013.12.31이전 기부금 지출액(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 기부금 조정명세의 이월 기부금 자동반영 |

3-5.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공제항목 | 공제조건 | 공제금액 | 한도 |
|----------|------------------------|----------|--------|
|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자 | 불입금액*40% | 연 72만원 |

3-6. 그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항목 | 공제조건 | 한도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대표자(2016.01.01이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능)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가능) | 근로소득4천만원이하 : 연500만원 근로소득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연300만원 근로소득1억원 초과 : 연200만원 |

3-7. 그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공제항목 | 공제조건 | 공제금액 |
|-----------|--|--------------------------|
| 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납입액 240만원 이하에 한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채만 소유한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불입금액*40% (연간 96만원 한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에 한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불입금액*40% (연간 96만원 한도)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월 납입액 15만원이하에 한함) | 불입금액*40% (연간 72만원 한도) |

3-8. 그밖의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 구분 | 공제금액 | 한도 |
|---|----------------|---|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 | 10% |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 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은 300만원한도) |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조합 및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100%, 70%, 30% | 종합소득금액의 50% |

3-9.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

| 구분 | 내용 |
|--------------|---|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를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도서공연,신문, 박물관,미술관 사용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⑤ 전통시장 사용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⑥ 대중교통 사용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⑦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⑧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 공제금액 | [총급여의 25% 초과] ①사용액 × 15% + ②③④사용액 × 30% + ⑤⑥⑦ × 40% (80%) (단, 대중교통 하반기 사용분은 80%) ※ 공제문턱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순으로 채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25%) ≤ 신용카드사용분(①+②+③+④) : ① × 15% + (최저사용금액-①) × 3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25%) > 신용카드사용분(①+②+③+④) : ① × 15% + ②+③+④×30% (최저사용금액-①-②-③-④) × 40% |
| 공제한도 | 300만원(250만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100만원(전통시장분) + 100만원(대중교통분)+100만원 (도서공연,신문, 박물관,미술관)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100만원 |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합니다.

3-10. 그밖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한도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 | 전액 | MIN(당해연도 출연금액, 일반기업 연 400만원, 벤처기업 연 1,500만원) |

3-11. 그밖의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삭감액의 50/100을 과세연도까지 1천만원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 입력항목 | 공제금액 | 한도 |
|--|---|-----------|-----------|
| 1.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를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2.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해당 과세연도가 감소된 경우 3. 상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계산하여 감소액 입력 | 감소액 * 50% | 연 1,000만원 |

3-12. 그밖의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한도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 투자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해당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제외 | 납입액*40%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

3-13.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대상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없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에서 제외 됩니다.

| 구분 | 종합한도포함소득공제 |
|--------------|--|
| 소득세 소득공제종합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득공제(단,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제1항)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3)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87조)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91조의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

3-14. 세액감면 – 소득세법

| 세액감면 | 공제요건 | 입력항목 | 공제 또는 감면세액 |
|------|--|--------------------|------------|
| 소득세법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입국목적- (1)정부간 협약 | 입력한 감면세액 |

3-15.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외)

| 세액감면 | 공제요건 | 입력항목 | 공제 또는 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입국목적- (2)기술도입계약 (3)조세특례제한법 | 감면세액 |
|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제외)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급 | 감면대상급여입력 감면율 : 50% | |
|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감면대상급여입력 감면율 : 50%(30%) | |
| |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감면대상급여입력 감면율 : 90%(50%) | |

3-16.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 세액감면 | 공제요건 | 공제 또는 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 2012.1.1~2019.12.31(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 2014.1.1~,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2017.1.1~)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병역근무기간제외:한도6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 대해 소득세를 100% (50%, 70%, 90%) 감면 2014.1.1 이후 입사자는 50%감면, 2016.1.1이후 입사자(경력단절 여성은 2017.1.1이후 입사)는 70% (150만원한도) 감면, 2018년 이후 신규 신청한 청년 입사자는 90% (150만원한도) ※ 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 기업체에 재취업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입력한 감면세액 |

3-17. 세액감면 – 조세조약

| 세액감면 | 공제요건 | 입력항목 | 공제 또는 감면세액 |
|------|--|--------------|------------|
| 조세조약 | 원어민 교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 교수조합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2년, 중국은 3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4)조세조약 상 감면 | 입력한 감면세액 |

3-18.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 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초과금액*30% | 총 급여액 기준 3천 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 300만원초과~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단,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을 경우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단,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을 경우 5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 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3-19.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 자녀세액공제 | 자녀의수 1명 2명 3명이상 | 세액공제금액 연 15만원 연 30만원 연 30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 | 출생입양공제대상자녀 |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 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 **기본공제대상자녀 (7세이상)**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아님

☞ 자녀 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 30①)

※ 부양가족명세의 출생입양란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 출산 입양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3-20.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 |
|-----------------------|--|-----------|---------------|---------------|-----|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 | 총급여액 | 대상한도(퇴직연금) | | 공제율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불입액 | | 5.5천만원 이하 | 50세미만 | |
| | | 1.2억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 연금저축 |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전 가입계좌 포함) | 1.2억원 초과 | 300만원(700만원) | | 12% |
| | | ISA계좌개인연금 | 총급여액 | 대상한도 | 공제율 |
| ISA계좌퇴직연금 | 5.5천만원이하 | 300만원 | | | |
| | 5.5천만원이상 | | 12% | | |

3-21.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공제항목 | 공제금액 |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 공제율 |
|-----------|-----------|-------------|-----|
| 일반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 100만원 한도 | 12% |
| 장애인전용보험료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 100만원 한도 | 15% |

3-22.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1.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연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연200만원이내)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구입 등)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 시술비가 전액한도 공제대상항목에 추가 되었습니다.
3.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전액한도 공제대상 항목에 추가 되었습니다.**
※ 건보법 시행 규칙에 따른 보조 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포함) 시 소요된 비용
※ 실손의료보험금 보상 받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항목 | 공 제 요 건 | 공제금액계산 |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 공제율 |
|---|---|--|-------------|--|
| 가.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건강보험특례대상자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전액을 입력합니다. | 총 지출액(단, '나'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 전액 |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 |
| 나. '가'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가'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입력합니다. | (의료비지출액-총급여의 3%) | 연 700만원 | 15% |

3-23.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 구분 | 공제범위 |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공제율 |
|-----------------------------|--------|---|-----|
| 근로자 본인 | 대학원 포함 | 전액 | 15% |
|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위탁아동 | 대학원 제외 | 미취학아동 ~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15% |

-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50만원 한도)도 공제 가능합니다.
Ex) 자녀 3명 (유치원생 3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000만원)일 때 교육비 총 공제금액은?
- 인원 별로 한도액을 체크하므로 유치원생 3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900만원으로 총 공제액은 1,300만원 입니다.
-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공제 됩니다.
-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지원 금액은 차감합니다.

3-24.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 공제항목 | 기부유형 |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공제율 |
|-------------|------------|---|--|
| 정치자금 | 20.정치자금 | 근로소득금액 X 100%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
| 법정기부금 | 10.법정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X 100%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우리사주기부금 | 42.우리사주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X 30%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20% (1천만원 초과분 35%) |
| 종교단체기부금 | 41.종교단체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X 10% + [MIN(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X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이월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40.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X 30% | |

☞ **고액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전과 동일

3-25. 특별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 | 공제요건 | 입력항목 | 공제액 |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중복적용가능 | 시뮬레이션 계산되어 자동 반영 | 연 13만원 |

3-26.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세액공제 | 공제요건 | 입력항목 |
|--------|-----------------|---|
| 납세조합공제 |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공제액-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 |

3-27.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 공제항목 | 입력항목 | 공제금액 |
|--------|--|-------------|
| 주택 차입금 | 95.11.1.~97.12.31.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차입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이자상환액 * 30% |

3-28. 세액공제 – 외국납부

| 세액공제 | 공제요건 | 공제 또는 감면세액 |
|--------|--|--|
| 외국납부세액 |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세액공제액을 입력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총 근로소득금액}}$ |

3-29. 세액공제 – 월세액

| 세액공제 | 공제요건 |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공제율 |
|------|---|------------|----------------------------------|
| 월세액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연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하 17%, 7천만원이하 15% |

4-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 항목 | 내 용 | 서비스 제공 |
|-------------|-----------------------------|--------|
| 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 |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 |
|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X |
| |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 △ |
|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 ○ |
|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 |
| |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X |
| |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 △ |
| |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 ○ |
| 주택자금 | 주택자금상환등 상환금액 |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이자상환증명서 | ○ |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 ○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 연금보험료 | 퇴직연금 납입금액 | ○ |
| | 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공제부금 불입금액 | ○ |
| 기부금 | 기부금액 | △ |
| 월세 | 월세 지출금액 | X |

※ 서비스 제공 여부 : ○(제공), ×(미제공), △(사업자등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납부

1. 기존 서면이나 전산매체(디스켓 제출)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대상 서식

[지급조서전산매체]메뉴에서 각 소득별로 전자신고용 파일을 제작합니다. 파일명은 소득종류별 알파벳 +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작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123-45-67890인 경우 지급명세서별 파일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식명 | 파일명 | 지급명세서 열람 메뉴 |
|--------------|---------------|-----------------|
| 근로소득 | C1234567.890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퇴직소득 | EA1234567.890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 사업소득 | F1234567.890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소득(연말정산용) | 31234567.890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신) |
| 거주자 기타소득 | G1234567.890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 BI1234567.890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배당소득 | B1234567.890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의료비 지급명세서 | CA1234567.890 | 연말정산자료입력 |

※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제작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 독립채산제 지점의 지급명세서는 본점에서도 일괄제출 가능하나, 추후 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실적을 비교하므로 가급적 지점에서 제출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이행상황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자 | 지급명세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
|----|------------------|------------|-----------|-------------------------|
| 개인 | 개인 | 사업장관할서 | 개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번호 |
| 법인 | 본점 | 본점 관할서 | 본점 | 본점 사업자번호 |
| | 독립채산제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사업자번호 |
| | 독립채산제 지점 (일괄납부자) | 지점 | 본점관할서 | 지점 사업자번호 |
| | 사업자단위과세자 | 본점·주사무소 | 본점·주사무소 | 본점·주사무소 사업자번호 |

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동일소득에 대해 여러 번 전송이 가능하며, 기간 내 마지막으로 전송한 자료가 최종신고 파일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전자제출 요령은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참조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징수의무자 표기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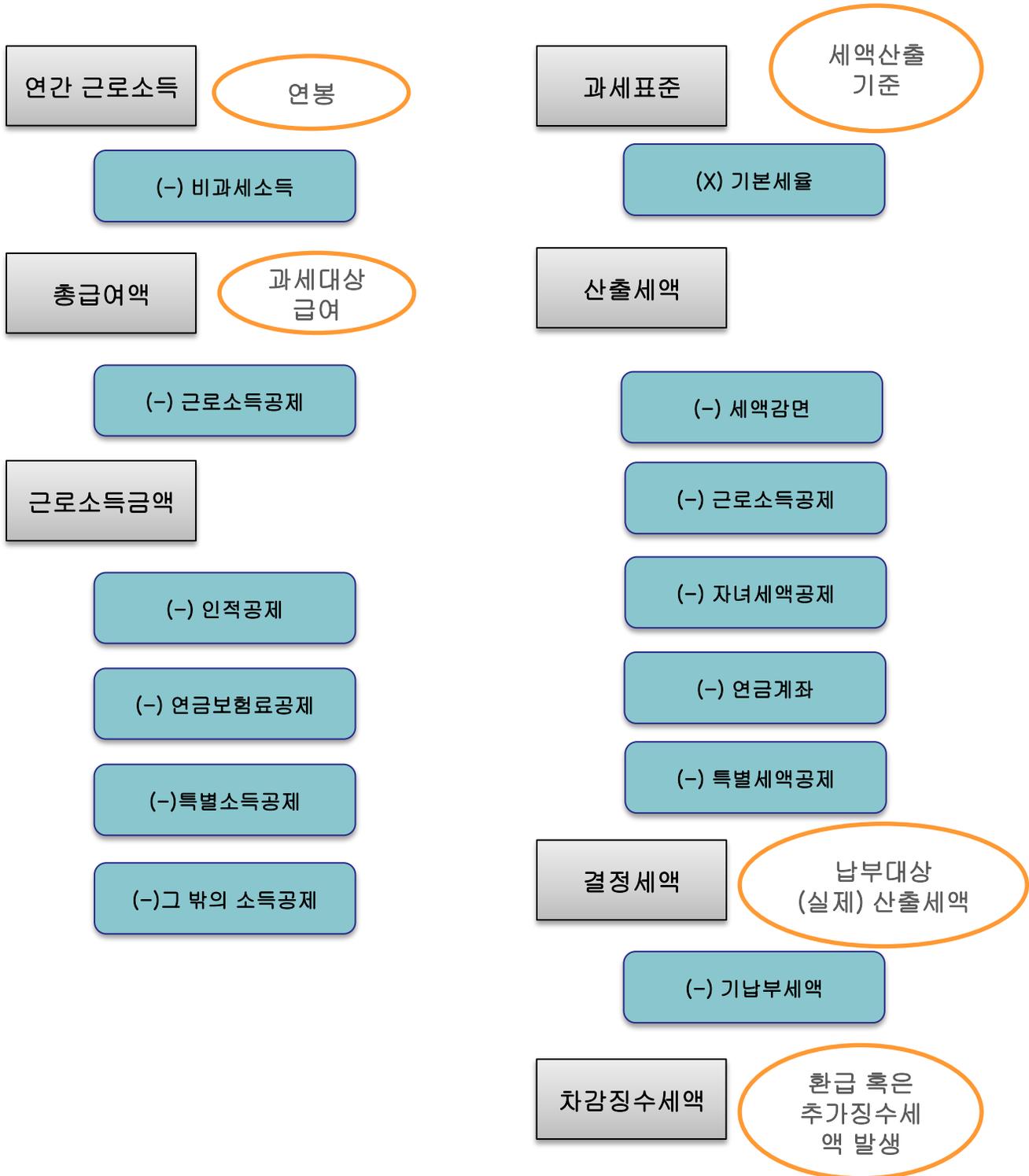
① 모든 지급명세서 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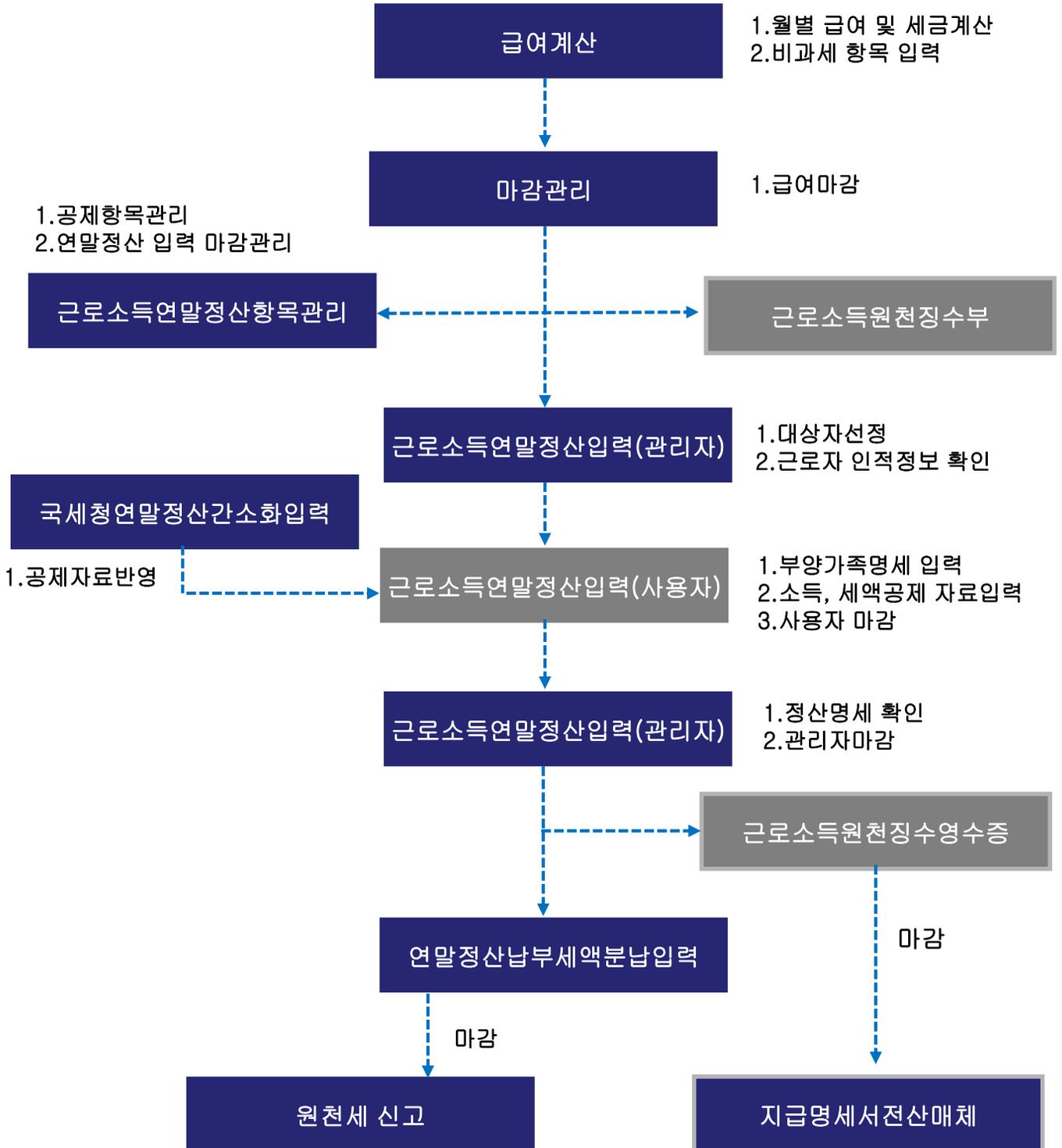
ERP10 연말정산 2022

**근로소득연말정산
(흐름도)**

[재직자 연말정산 흐름도]



ERP10 연말정산 자료 흐름도



ERP10 연말정산 2022

근로소득연말정산 [사용법]

근로소득연말정산 준비작업

◆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항목관리

근로소득연말정산항목관리

항목정보 | **공제정보** | 연말정산마감관리

귀속년도 | 2022

| No | 코드 | 항목명 | 관리항목코드 | 관리항목명 | 구간 | | 공제율 | 공제한도액 | 종합한도여부 |
|----|-----|--------|--------|--------|----|-----|-----|-----------|--------|
| | | | | | 시작 | 종료 | | | |
| > | A10 | 기본공제 | 11 | 본인 | | | | 1,500,000 | No |
| 2 | A10 | 기본공제 | 12 | 배우자 | | | | 1,500,000 | No |
| 3 | A10 | 기본공제 | 13 | 부양가족 | | | | 1,500,000 | No |
| 4 | A11 | 추가공제 | 11 | 경로우대 | 70 | 999 | | 1,000,000 | No |
| 5 | A11 | 추가공제 | 12 | 장애인 | | | | 2,000,000 | No |
| 6 | A11 | 추가공제 | 13 | 부녀자 | | | | 500,000 | No |
| 7 | A11 | 추가공제 | 14 | 원부모가족 | | | | 1,000,000 | No |
| 8 | A21 | 지나세액공제 | 1 | 공제대상자녀 | 0 | 1 | | 150,000 | No |
| 9 | A21 | 지나세액공제 | 1 | 공제대상자녀 | 1 | 99 | | 300,000 | No |
| 10 | A21 | 지나세액공제 | 3 | 출산.입양 | 0 | 1 | | 300,000 | No |
| 11 | A21 | 지나세액공제 | 3 | 출산.입양 | 1 | 2 | | 500,000 | No |
| 12 | A21 | 지나세액공제 | 3 | 출산.입양 | 2 | 99 | | 700,000 | No |

근로소득연말정산항목관리

항목정보 | 공제정보 | **연말정산마감관리**

정산년도 | 2022

마감처리 | 마감취소

| 정산구분 | 정산년월 | 마감유무 | 마감자 | 마감일자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1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2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3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4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5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6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7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8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09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10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11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취직자 | 2022-12 | 미마감 | | |
| <input type="checkbox"/> 계속근무자 | 2022-12 | 미마감 | | |

근로소득연말정산항목관리

- 연말정산(근로소득)에 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하여 세법상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 메뉴입니다.
- 조회메뉴이며, 항목 개정시 유지보수가 되어 있을 경우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공제정보 탭에서 해당 연말정산작업을 진행할 귀속년도를 선택한 후 조회하여 해당 귀속년도 공제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귀속년도 공제정보에 데이터가 있어야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마감관리 탭에서 연말정산작업이 완료된 후 더 이상 수정을 원하지 않은 경우 마감처리 버튼을 통해 마감 상태값 변동이 불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관계코드설정)

◆메뉴: 공통코드등록

1. 관계코드

| 구 분 | 관계코드 | 구 분 | 관계코드 | 구 분 | 관계코드 |
|-------------------------|------|--------------------------------|------|--------------------------------|------|
| 소득자 본인 (소법 § 50 ① 1) | 0 |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③ 가) | 1 |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③ 가) | 2 |
| 배우자 (소법 § 50 ① 2) | 3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 50 ③ 나) | 4 |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 50 ③ 나) | 5* |
| 형제자매 (소법 § 50 ③ 다) | 6 | 수급자(코드 1~6제외) (소법 § 50 ③ 라) | 7 | 위탁아동 (소법 § 50 ③ 마) | 8 |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부양가족(관계코드)- 공통코드등록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유의사항 '1.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공통코드등록 - 관계]에 추가된 관계코드의 참조란에 해당코드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구분코드 값은 ERP10 시스템에서 사용할 코드이며, 참조란에 설정한 코드값이 연말정산 시 부양관계코드로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선정 이전에 관계코드의 참조를 모두 등록하고 가족관계에 맞는 관계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코드등록의 '관계'코드는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메뉴의 '부양관계' 도움말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본인공제설정)

◆메뉴: 공통코드등록

이 화면은 '인적사항' 탭에서 장애인여부 설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장애인여부' 항목이 'No'로 선택되어 있으며, '장애구분'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 화면은 '급여기초' 탭에서 세대주여부 설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세대주여부' 항목이 'Yes'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본인공제설정

- [사원등록-인적사항]에서 장애인여부에 'YES', 장애구분을 선택하시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메뉴에서 대상자선택 시, 장애인여부에 '해당'으로 표기됩니다.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해당'인 경우 장애 구분 코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사원등록-급여기초]에서 부녀자공제와 세대주여부를 선택하고 [연말정산자료입력]메뉴에서 대상자선택 시 인적공제 탭에 두 항목의 해당여부가 반영됩니다.

인적공제(가족사항 확인)

◆메뉴: 공통코드등록

| No | 생년월일 | 양육여부 | 내국인여부 | 외국인식별번호 | 최종학력 | 생일대상 | 수당유무 | 연말정산대상 | 기본공제대상 | 사망여부 | 장애인여부 |
|----|------------|------|-------|---------|------|------|------|--------|--------|------|-------|
| > | 1984-10-21 | 양육 | 내국인 | | | | | Yes | Yes | No | |
| 2 | 2013-01-13 | 양육 | 내국인 | | | | | Yes | Yes | No | |
| 3 | 2009-12-21 | 양육 | 내국인 | | | | | Yes | Yes | No | Yes |

TIP

| | | | |
|--------|---|------|---|
| 연말정산대상 | V | 부양여부 | V |
|--------|---|------|---|

나이 조건과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를 만족하는 인적 공제 대상자의 경우
(예 - 20세 이하 소득이 없는 자녀)

| | | | |
|--------|---|------|--|
| 연말정산대상 | V | 부양여부 | |
|--------|---|------|--|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나, 특별공제(의료비 등)에 해당 되는 경우
(예- 2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이 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 | | |
|--------|--|------|---|
| 연말정산대상 | | 부양여부 | V |
|--------|--|------|---|

연말정산 대상에 체크가 없으므로 부양여부에 체크를 해도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으로 반영 안됨

부양가족사항 확인

- **[사원등록-추가정보]** 가족사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메뉴에서 대상자 선정 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 때 주민번호, 연말정산대상, 부양여부,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공제'가 자동으로 계산 되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주민번호, 부양(소득 100만원 이하)여부, 연말정산대상, 부양관계, 장애여부, 장애구분은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대상** : 가족 중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을 체크합니다.
연말정산대상에 체크된 가족만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메뉴의 부양가족으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부양여부**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체크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메뉴의 부양가족으로 자동으로 불러올 때, **관계코드별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나이를 계산하고 이에 **부양여부 조건**을 더하여 기본공제, 자녀공제 등의 항목을 자동 체크합니다.
의료비 공제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이므로 의료비공제대상자인 경우 '연말정산대상'에는 체크되나, '부양여부'는 미 체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여부, 외국인여부**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체크합니다. **장애여부에 체크한 부양가족은 '부양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메뉴의 부양가족명세 탭에 기본공제 및 장애여부에 자동체크 됩니다.** 사원 본인이 장애인이고 [사원등록 - 인적사항]에 장애인여부에 'Yes'으로 선택한 경우 연말정산대상자 선정 시, 장애여부가 반영됩니다. [사원등록] 장애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연말정산대상자로 반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메뉴에서 직접 장애여부와 구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대상자선정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대상자 선정

| No | 사원번호 | 사원구분 | 성명 | 사업장명 | 부서명 |
|----|------------|------|-----|-----------|--------|
| 9 | 2018042304 | 사무직 | 마리아 | 사업장명 | 운영팀 |
| 10 | 2018042305 | 사무직 | 관나세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1 | 2018042306 | 사무직 | 박시원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2 | 2018042307 | 사무직 | 원수경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3 | 2018042401 | 사무직 | 주연하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4 | 2018052101 | 사무직 | 이덕무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5 | 2019040001 | 연구직 | 김은화 | 사업장명 | 운영팀 |
| 16 | 2019042499 | 생산직 | 이용식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7 | 2019042601 | 사무직 | 홍광동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8 | 2019042602 | 사무직 | 박남영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19 | 2019043001 | 사무직 | 김수영 | 사업장명 | 운영팀 |
| 20 | 2019043222 | 사무직 | 이용규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21 | 2019050702 | 사무직 | 최지영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22 | 2019050703 | 사무직 | 강수영 | 강촌스마트유타센터 | 구축팀 |
| 23 | 2019050705 | 사무직 | 김경아 | 사업장명 | ERP개발팀 |

| 기본공제 | 경로우대 | 자녀공제 | 장애인 | 출산입양 | 나이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7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6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9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4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23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대상자선정

- 근로소득연말정산(사용자) 에서 입력한 정보를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정산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한 후 상단의 대상자관리>대상자선정 버튼을 통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사원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선정된 사원의 좌측 대상자 리스트에서 조회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버튼안내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데이터를 마감하시면 전자파일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 재정산 | 일괄조정 | 기부금일괄처리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정산연도: 2022 | 진행상태: 전체 | 대상자선택: 새로고침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기본정보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 | 소득명세 | 비과세 및 감면소득 | 급여현황 | 정산명세

기본정보

부서: 운영팀
 퇴사일: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국민등록번호:
 정산연월: 2022.12
 세대주여부: 미해당
 무주택자여부: 부
 단월세유여부: 미해당
 분납신청: 미신청
 교인증사여부: 부

새로고침

| 항목 |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 급여 데이터를 재적용합니다. |
|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 부양가족 데이터를 재적용합니다. |
| <input type="checkbox"/> 조직 및 인적정보 | 근로자의 조직 및 인적정보를 재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근로소득 과 조직 및 인적정보를 재적용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 하는 작업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재적용시 사용자의 실수로부터 데이터 손실 방지의 목적으로 기존에 반영된 부양가족 정보는 수정 및 삭제하지 않고 신규 부양가족에 한하여 저장됩니다.

적용 | 닫기

| No | 사원번호 | 사원명 | 진행상태 | 정산유형 | 기본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자녀 공제 | 장애인 | 출산입양 | 나이 |
|----|----------|-----|---------------|------|----------------|-------------------------------------|-------------------------------------|-------------------------------------|--------------------------|-----|------|----|
| | D1000000 | 정주훈 | | | | 851205-11526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7 |
| | | | | | | 861021-2183857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9 |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4 |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자매 | 내국인 | 991215-2223569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23 |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새로고침

-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후 사원정보, 급여정보가 변경된 경우 새로 반영해 주는 기능입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소득명세탭의 급여정보, [급여계산]에서 가지고 오는 값을 갱신합니다. (연말정산입력 대상자선정 후 급여마감 금액이 변경된 경우 적용합니다.)
- 부양가족(추가만 가능):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메뉴의 부양가족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가족이 존재할 때에는 데이터 보존을 위하여 반영되지 않으며, [사원등록]메뉴에서 추가로 입력한 가족정보만을 불러옵니다.
 ※관계코드 미입력 또는 비정상코드일 경우 부양가족 대상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통코드등록 메뉴에서 관계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직 및 인적정보: 근로자 본인의 사업장, 부서 등 조직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등 인적정보를 현재 사원등록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버튼안내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데이터를 마감하시면 전자파일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 재정산 > 일괄조정 > 기부금일괄처리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정산연도: 2022 | 진행상태: 전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기본정보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 | 소득명세 | 비과세 및 감면소득 | 급여현황 | 정산명세

기본정보

사업장: 부회 | 부서: 운영팀

직위: | 퇴사일: |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정산연월: 2022-12

세대주여부: 미해당 | 부주채자여부: 부

분납신청여부: 미해당 | 분납신청: 미신청

등교인증사여부: 부

주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기본 공제 | 영로 우대 | 자녀 공제 | 장애인 | 출산입양 | 나이

| | | | | | | | | | | | | |
|----|-----|-----|---------------|-----|----------------|-------------------------------------|--------------------------|-------------------------------------|--------------------------|-----|-----|----|
| No | 이름 | 직책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851205-11526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7 |
| 2 | 송신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861021-2183857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9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4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지배 | 내국인 | 991215-2223569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23 |

재정산 하시겠습니까?
 선택한 대상자 중 원천세 신고지 설정에서 정산년월이 마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산 되지 않습니다.
 기존 정산 데이터는 초기화되며 표준공제와 일반공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정 됩니다.
 [직업중] 인 상태는 [사용자마감] 으로 변경됩니다.

예 | 아니요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데이터를 마감하시면 전자파일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 재정산 > 일괄조정 > 기부금일괄처리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정산연도: 2022 | 진행상태: 전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기본정보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 | 소득명세 | 비과세 및 감면소득 | 급여현황 | 정산명세

기본정보

사업장: 부회 | 부서: 운영팀

직위: | 퇴사일: |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정산연월: 2022-12

세대주여부: 미해당 | 부주채자여부: 부

분납신청여부: 미해당 | 분납신청: 미신청

등교인증사여부: 부

주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기본 공제 | 영로 우대 | 자녀 공제 | 장애인 | 출산입양 | 나이

| | | | | | | | | | | | | |
|----|-----|-----|---------------|-----|----------------|-------------------------------------|--------------------------|-------------------------------------|--------------------------|-----|-----|----|
| No | 이름 | 직책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851205-11526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7 |
| 2 | 송신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861021-2183857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9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4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지배 | 내국인 | 991215-2223569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23 |

일괄 조정

| 항목 | 설정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 | 100%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수일자 | 2023-02-28 |

유의사항
 사용자마감, 관리자마감 대상자는 제외되며 작업 중인 대상자만 일괄 조정됩니다.

일괄 조정 | 닫기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일괄조정

- 재정산: 입력된 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며, 자동계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산됩니다.
 선택한 대상자 중 근로소득연말정산항목관리에서 정산년월이 마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산되지 않습니다. 기존 정산 데이터는 초기화되며, 표준공제와 일반공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정되며, 작업중인 데이터는 사용자마감으로 변경됩니다.
- 일괄조정: 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과 분납신청여부, 영수일자를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마감, 관리자마감 대상자는 제외되며 작업 중인 대상자만 일괄조정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버튼안내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데이터를 마감하시면 전자파일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 재정산 | 일괄조정 | **기부금일괄처리**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정산연도: 2022 | 진행상태: 전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기본정보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 | 소득명세 | 비과세 및 감면소득 | 급여현황 | 정산명세

| No | 사원번호 | 사원명 | 진행상태 | 정산유형 |
|----|----------|-----|------|------|
| > | D1000000 | 정주훈 | 작업중 | 거주자 |

기부금 일괄 처리

| 항목 | 내용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년도 이월 기부금 | 전년도 이월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해년도 기부금 | 당해년도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

유의사항

진행상태가 작업중 인 대상자들만 처리됩니다.
 기부 명세의 자료를 기부금 조정 명세로 반영합니다.
 선택한 항목의 기존 기부금 조정 명세 자료는 모두 삭제됩니다.

반영 | 취소

부양가족 인적사항

| No | 성명 | 부양관계 | 신고부양관계 | 내외국인 구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자녀 공제 | 장애인 | 출산입양 | 나이 |
|----|-----|------|---------------|---------|------------------|-------------------------------------|--------------------------|-------------------------------------|-----|------|----|
| > | 정주훈 | 본인 | 소득자본인 | 내국인 | 851205-11526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7 |
| 2 | 송신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861021-2183857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9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4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자매 | 내국인 | 991215-2223569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비해당 | 23 |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부금일괄처리

• 기부금일괄처리: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메뉴의 기부금명세의 '기부금조정명세 반영'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전년도 이월 기부금에 체크하여 반영하는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을 ERP10에서 진행하였고, 기부금조정명세에 이월 금액이 입력하여 마감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조정명세로 반영합니다.

당해년도 기부금에 체크하여 반영하는 경우상단의 해당연도기부명세에 입력한 내역을 조정명세로 반영합니다.

진행상태가 작업중인 대상자들만 처리됩니다. 선택한 항목의 기존의 조정명세 자료는 모두 삭제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 버튼안내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ERP10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화면 캡처. '마감' 버튼이 강조되어 있으며, '마감취소' 버튼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표시된 대화상자는 '선택된 대상자의 마감을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원천세 신고지 설정에서 정산년월이 마감되어 있는 경우 마감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 No | 성명 | 부양관계 | 신고부양관계 | 내외국인 구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자녀 공제 | 장애인 | 출산입양 | 나이 |
|----|-----|------|---------------|---------|------------------|-------------------------------------|--------------------------|-------------------------------------|-----|------|----|
| > | 정주준 | 본인 | 소득자본인 | 내국인 | 851205-11526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37 |
| 2 | 송신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861021-2183857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9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4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자매 | 내국인 | 991215-2223569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23 |

ERP10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화면 캡처. '마감취소' 버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표시된 대화상자는 '선택된 대상자의 마감 취소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원천세 신고지 설정에서 정산년월이 마감되어 있는 경우 마감취소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 No | 성명 | 부양관계 | 신고부양관계 | 내외국인 구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자녀 공제 | 장애인 | 출산입양 | 나이 |
|----|-----|------|---------------|---------|------------------|-------------------------------------|--------------------------|-------------------------------------|-----|------|----|
| > | 정주준 | 본인 | 소득자본인 | 내국인 | 851205-11526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37 |
| 2 | 송신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861021-2183857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9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4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자매 | 내국인 | 991215-2223569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미혜당 | 비혜당 | 23 |

근로소득연말정산 마감, 마감취소

- 마감: 선택된 사원의 진행상태가 사용자마감일 경우 데이터마감을 진행합니다.
- 마감취소: 선택된 사원의 진행상태가 취소요청 또는 관리자마감일 경우 데이터마감해제를 진행합니다. 마감취소하는 경우 진행상태가 '작업중' 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명세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데이터를 마감하시면 전자파일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 재정산 | 일괄조정 | 기부금일괄처리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정산연도: 2022 | 진행상태: 전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 기본정보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 | **소득명세** | 비과세 및 감면소득 | 급여현황 | 정산명세

| No | 사원번호 | 사원명 | 진행상태 | 정산유형 | 구분 | 공제항목 | 금액 | | | | | | | | |
|----|--------------------------|----------|------|------|-------|---------------|------------|-------|----|------------|--|--|--|--|--|
| | | | | | | | 급여(현근무지) | 종전근무지 | 추가 | 합계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D1000000 | 정주훈 | 작업중 | 거주자 | | | | | | | | | | |
| | | | | | 근로소득 | 급여 | 60,000,000 | 0 | 0 | 60,000,000 | | | | | |
| | | | | | 근로소득 | 상여 | 0 | 0 | 0 | 0 | | | | | |
| | | | | | 근로소득 | 인정상여 | 0 | 0 | 0 | 0 | | | | | |
| | | | | | 근로소득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0 | 0 | 0 | 0 | | | | | |
| | | | | | 근로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출금 | 0 | 0 | 0 | 0 | | | | | |
| | | | | | 근로소득 |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 0 | 0 | 0 | 0 | | | | | |
| | | | | | 근로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 0 | 0 | 0 | 0 | | | | | |
| | | | | | 소계 | | 60,000,000 | 0 | 0 | 60,000,000 | | | | | |
| | | | | | 보험료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3,000,000 | 0 | 0 | 3,000,000 | | | | | |
| | | | | | 보험료 | 고용보험 | 540,000 | 0 | 0 | 540,000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3,600,000 | 0 | 0 | 3,600,000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지역) | 0 | 0 | 0 | 0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 | 0 | 0 | 0 | 0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군인연금 | 0 | 0 | 0 | 0 | | | | | |

소득명세 유의사항

공제항목의 현근무지 금액과 종전근무지의 금액은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추가로 입력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금액만을 통해 금액을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명세

- 소득자의 근로소득 내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에서 마감된 데이터 이외에 추가 금액은 추가항목 컬럼을 통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 ※ 급여에서 반영된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하며, 급여 수정 후 마감관리에서 마감, 새로고침-근로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종전근무지 내역은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에서 종전근무지 탭에 입력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비과세및감면소득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데이터를 마감하시면 전자파일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명수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 재정산 | 일괄조정 | 기부금일괄처리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정산연도: 2022 | 진행상태: 전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기본정보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 | 소득명세 | **비과세 및 감면소득** | 급여현황 | 정산명세

| 비과세 소득 | | 급여금액 | 총전금액 | 추가금액 | 합계 |
|--------|-------|-----------|------|------|-----------|
| 코드 | 비과세명 | | | | |
| H07 | 연구보조비 | 2,000,000 | 0 | 0 | 2,000,000 |
| 총액 | | 2,000,000 | 0 | 0 | 2,000,000 |

· 감면 소득

| 코드 | 비과세명 | 급여금액 | 총전금액 | 합계 |
|----|------|------|------|----|
| 총액 | | |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속연월: 2022-01 ~ 2022-12 | 사업장: ERP10 제1사업장 | 조회구분: 사원별

0. 사원별 요약 | I. 근로소득지급명세 | II. 비과세소득 | III.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 월 |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 | | | | |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 소득 | | | | |
|-----|--------------------|-----------|-----------|-----------|-----------|----------------------|----------------|-----------|-----------|--|
| | 국외근로소득 38.원화 | 39.야간근로수당 | 40.출산보육수당 | 41 ~ 49 | 50.합계 | 51.일직료 등 | 52.자기유전 보조금 | 53 ~ 59 | 60.합계 | |
| 01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2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3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4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5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6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7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8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09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10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11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12월 | 0 | 0 | 0 | 200,000 | 200,000 | 0 | 0 | 100,000 | 100,000 | |
| 합계 | 0 | 0 | 0 | 2,400,000 | 2,400,000 | 0 | 0 | 1,200,000 | 1,200,000 | |

근로소득연말정산 비과세및감면소득

- 소득자의 근로소득 내역에서 등록된 비과세, 감면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 비과세나 감면소득 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여부' 의 O표시 비과세만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는 크게 신고비과세와 미신고비과세로 나뉘며, 이 중 지급명세서 작성 비과세는 신고비과세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비과세및감면소득

◆메뉴: 계산식등록, 급여계산

계산식등록

고용형태: 상용직 | 사원구분: 연봉제 | 급여구분: 급여 | 지급공제구분: 지급 | 연월: 2021-02 | 검색어: 코드/지급공제명

| 기본급 | 과세여부 | 비과세종류코드 | 비고 |
|-----|------|---------|------|
| P01 | No | 연구보조비 | |
| P02 | | H07 | 비안월사 |
| P03 | Yes | | |
| P04 | 해당 | | |
| P05 | Yes | | |
| P08 | 해당 | | |
| P11 | Yes | | |
| P12 | Yes | | |
| P06 | Yes | | |
| P13 | Yes | | |

급여계산

귀속년월: 2022-01 | 사원번호: D1000000 | 사명: 정주원 | 급여구분: 급여 | 지급일자: 2022-01-05 | 고용형태: 상용직 | 급여제책: 2022년01월상당직급여

| No | 사원번호 | 성명 | 지급항목 | 금액 | 비과세금액 | 계산내역 |
|----|----------|-----|---------|-----------|---------|-----------------|
| > | D1000000 | 정주원 | 기초급 | 5,000,000 | 0 | 5,000,000*31/31 |
| | | | 식사대 | 100,000 | 100,000 | 100,000*31/31 |
| | | | 자기운전보조금 | 0 | 0 | |
| | | | 아간근로수당 | 0 | 0 | |
| | | | 기타수당 | 0 | 0 | |
| | | | 근속수당 | 0 | 0 | |
| | | | 직책수당 | 0 | 0 | |
| | | | 기타수당2 | 0 | 0 | |
| | | | 상여급 | 0 | 0 | |
| | | | 연구보조비 | 200,000 | 200,000 | 200,000*31/31 |

비과세금액: 300,000 (연구보조비 200,000 + 식사대 100,000)

비과세종류코드: 연구보조비, H07

근로소득연말정산 비과세및감면소득

•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계산식등록] 메뉴의 과세여부와 비과세종류코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여부와 비과세종류코드'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 i) [계산식등록] 메뉴의 과세여부와 비과세종류코드를 수정하고,
- ii) [급여계산]메뉴에서 더보기-'비과세재계산'버튼을 눌러 비과세를 재계산 해야 됩니다.

이 때, 해당월에 기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메뉴의 '총지급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설정값

◆메뉴: 연말정산환경설정,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연말정산환경설정

| No | 기준항목코드 | 기준항목 | 항목코드 | 항목명 | 통제항목설명 |
|----|--------|--------------------------|------|-----|--|
| 1 | TAY051 | 대상자선정 허용유무(주민번호) | 1 | 사용 | 동일 주민번호로 종전근무지 가져오기 사용 |
| 2 | TAY101 | 근로연말정산(사용자) 메뉴의 정산템 사용유무 | Y | 사용 | 근로연말정산(사용자)메뉴의 [연말정산명세] 탭을 사용/미사용 합니다.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정산구분: 중도퇴직자 | 정산연도: 2022 | 1월 | 12월 | 진행상태: 전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 No | 사원번호 | 사원명 | 진행상태 | 정산유형 |
|----|----------|-----|------------|------|
| > | D1000001 | 김철수 | 관리자미검 (표준) | 거주자 |

기본정보

사업장: 본점 | 부서: 운영1팀
 입사일: 2020-01-01 | 퇴사일: 2022-02-28
 거주구분: 거주자 |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_____
 근무기간: 2022-01-01 ~ 2022-02-28 | 정산연월: 2022-02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정산연도: 2022 | 진행상태: 전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 No | 사원번호 | 사원명 | 진행상태 | 정산유형 |
|----|----------|-----|------------|------|
| 1 | D1000000 | 정주준 | 사용자미검 (일반) | 거주자 |
| > | D1000002 | 김철수 | 직업증 | 거주자 |

소득명세

| 구분 | 공제항목 | 금액 | 증전근무지 | 증가 | 합계 |
|------|-------------|------------|-----------|----|------------|
| 근로소득 | 급여 | 10,500,000 | 6,000,000 | 0 | 16,500,000 |
| | 상여 | 0 | 0 | 0 | 0 |
| | 인정상여 | 0 | 0 | 0 | 0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0 | 0 | 0 | 0 |
| | 우려사주조합인출금 | 0 | 0 | 0 | 0 |
| | 합계 | | | |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철수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종전근무지 정보

| No | 구분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시작일 | 종료일 | 시작일 | 종료일 | 종교연속여부 |
|----|-------|-----|--------------|------------|------------|-----|-----|--------|
| > | 종전근무지 | 본점 | 888-55-99999 | 2022-01-01 | 2022-02-28 | | | 부 |

소득명세 및 보령료

| 구분 | 공제항목 | 금액 | 구분 | 공제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 | 급여 | 6,000,000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240,000 |
| | 상여 | 0 | | 국민연금(지역) | 0 |
| | 인정상여 | 0 | | 공무원연금 | 0 |
| | 인정상여 | 0 | | 군인연금 | 0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0 | | 별정무제국연금 | 0 |
| | 우려사주조합인출금 | 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0 |
| 합계 | 6,000,000 | 보험료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200,000 | |
| | | | 고용보험 | 54,000 | |

종전근무지 상세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명세서상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회사 전출일 등으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무자의 경우 상세 납부한 내용을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설정값

- TAY51:대상자선정 허용유무(주민번호): 중도퇴직자로 연말정산을 한 사원이 재입사하여 근무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대상자선정시 주민번호가 같은 정보의 중도퇴직 연말정산 내역을 종전근무지로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설정값

◆메뉴: 연말정산환경설정,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연말정산환경설정

| No | 기준항목코드 | 기준항목 | 항목코드 | 항목명 | 통제항목설명 |
|----|--------|-------------------------------|------|-----|--|
| 1 | TAY051 | 대상자신청 허용유무(주민번호) | 1 | 사용 | 동일 주민번호로 종전근무지 가져오기 사용 |
| 2 | TAY101 | 근로연말정산(사용자) 메뉴의 정산탭 사용유무 | Y | 사용 | 근로연말정산(사용자)메뉴의 [연말정산명세] 탭을 사용/미사용 합니다. |
| 3 | TAY102 | 근로연말정산(사용자) 메뉴의 분납처리 활성화 유무 | Y | 활성화 | 사용자메뉴의 "분납신청" 항목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
| > | TAY103 | 근로연말정산(사용자) 메뉴의 원천징수세액 활성화 유무 | Y | 활성화 | 사용자메뉴의 "원천징수세액" 항목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정주준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정산항목 | 금액 | 정산항목 | 금액 |
|-------------------------------------|------------|----------------------|------------|
| 21.총급여(16.다만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에는 연건 근로소득) | 60,000,000 | 48.종합소득 과세표준 | 34,110,000 |
| 22.근로소득공제 | 12,750,000 | 49.산출세액 | 4,036,500 |
| 23.근로소득금액 | 47,250,000 | 50.「소득세법」 | 0 |
| 24.본인 | 1,500,000 | 51.「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 0 |
| 25.배우자 | 1,500,000 | 52.「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0 |
| 26.부양가족 (2명) | 3,000,000 | 53.조세조약 | 0 |
| 27.경로우대 (0명) | 0 | 54.세액감면 계 | 0 |
| 28.장애인 (0명) | 0 | | |
| 29.부녀자 | 0 | |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정주준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부양가족 인적사항

| No | 성명 | 부양관계 | 신고부양관계 | 내외국인 구분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 | 장애인 | 기본공제 | 결혼우대 | 자녀공제 | 출산인양 | 나이 (만) |
|----|-----|------|---------------|---------|----------------|---------|--------------------------|------|-------------------------------------|--------------------------|-------------------------------------|------|--------|
| > | 정주준 | 본인 | 소득자본인 | 내국인 | 851205-1152699 | | <input type="checkbox"/> | 미 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 해당 | 37 |
| 2 | 송선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861021-2183857 | | <input type="checkbox"/> | 미 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 해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 <input type="checkbox"/> | 미 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 해당 | 9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 <input type="checkbox"/> | 미 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 해당 | 4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지배 | 내국인 | 991215-2223569 | | <input type="checkbox"/> | 미 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 해당 | 23 |

· 부양가족 집계 -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 반영됩니다.

| 기본 | | | | 추가 | | | | 세액 | |
|-------|-------|-----|-----|------|-------|-----|----|------|--|
| 20세이하 | 60세이상 | 수급자 | 장애인 | 위탁아동 | 70세이상 | 장애인 | 자녀 | 출산인양 | |
| 2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1명 | 0명 | |

사용자 지정 급여연환

사원명: ERP10 제1사원장

직위: ERP10 제1부서

입사일: 2019-01-01

부양인양: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8512051152699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미 해당

인적공제대상: 연년과 동일

부양가족:

원천징수세액: 100%

분납신청: 미신청

배우자공제: 해당

부녀자공제: 미 해당

한부모공제: 미 해당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설정값

- TAY101: 근로연말정산(사용자) 메뉴의 정산탭 사용유무: 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입력(사용자)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료 입력 탭의 활성화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TAY102: 근로연말정산(사용자) 메뉴의 분납처리 활성화 유무/ TAY103: 근로연말정산(사용자) 메뉴의 원천징수세액 활성화 유무 : 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입력(사용자) 메뉴에서 기본정보 탭의 원천징수세액/ 분납신청 항목의 활성화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본정보 와 인적정보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ERP10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i
+
🔍
🗑️
🖨️
★

!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정주준

기본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
기부금명세
중전근무지
연말정산명세

· 부양가족 인적사항

| No | 성명 | 부양관계 | 신고부양관계 | 내외국인 구분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 | 장애인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자녀 공제 | 출산입양 | 나이 (만) |
|-----|-----|------|---------------|---------|----------------|---------|--------------------------|-----|-------------------------------------|--------------------------|-------------------------------------|------|--------|
| > 1 | 정주준 | 본인 | 소득자본인 | 내국인 | 851205-1152699 |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해당 | 37 |
| 2 | 송신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861021-2183857 |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해당 | 36 |
| 3 | 정수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30113-4830181 |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해당 | 9 |
| 4 | 정우연 | 자녀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내국인 | 180912-3325999 |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해당 | 4 |
| 5 | 정주희 | 형제 | 형제자매 | 내국인 | 991215-2223569 | |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비해당 | 23 |

· 부양가족 집계 -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 반영됩니다.

| 기본 | | | | | 추가 | | 세액 | |
|-------|-------|-----|-----|------|-------|-----|----|------|
| 20세이하 | 60세이상 | 수급자 | 장애인 | 위탁아동 | 70세이상 | 장애인 | 자녀 | 출산입양 |
| 2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1명 | 0명 |

· 부양가족 정보 -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 반영됩니다.

사용자정보
급여연환

사업장 ERP10 제1사업장

부서 ERP10 제1부서

입사일 2019-01-01

퇴사일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8512051152699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여부 미해당

인적공제항목 전년과 동일

무주택자여부 부

원천징수세액 100%

분납신청 미신청

배우자공제 해당

부녀자공제 미해당

한부모공제 미해당

부양가족인적사항

- 대상자선정 시 [사원등록]메뉴의 [추가정보-가족사항]탭에 등록된 가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 반영되며 상단 추가 버튼을 통해 직접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부양관계,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자녀공제 등이 자동 체크되고 장애인, 출산 입양은 선택에 따라 반영 됩니다.
단, 출산입양의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 출산, 입양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집계 :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반영 됩니다.

사용자 정보

- 대상자선정 시 [사원등록]메뉴에 등록 한 값이 자동 반영 되며 일부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 가능 합니다.
- 세대주여부 : 근로자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선택 합니다.
- 인적공제항목 : 전년과 인적공제 항목이 변경 된 경우 선택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 급여 간이세액 원천징수 시 반영하는 세액을 선택 합니다.
(변경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납신청 :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이상 인 경우 3개월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하는 경우 선택 합니다.
- 부녀자공제 : 50만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가능 합니다.
- 한부모공제 :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선택 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 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선택 합니다.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1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중 |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금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공제항목 | 금액 |
|------------|------------|
| 신용카드 | 15,000,000 |
| 직불카드 | 5,000,000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도서공연등사용분 | 1,450,000 |
| 전통시장사용분 | 0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전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1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설명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사용금액연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총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도서공연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금액: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총액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15%

| No | 성명 | 관계 | 자료구분 | 사용금액 | 제외금액 |
|----|-----|----|-------|------------|------|
| > | 김국세 | 본인 | 국세청자료 | 15,000,000 | 0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1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중 |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금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공제항목 | 금액 |
|-------------|------------|
| 신용카드 | 15,000,000 |
| 직불카드 | 5,000,000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도서공연등사용분 | 1,450,000 |
| 전통시장사용분 | 0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전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당해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1 신용카드등 - 전년도전체사용분 설명

- 전년도 신용카드등 총 사용금액
- 공제금액: 귀속연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전년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105%)

| No | 성명 | 관계 | 자료구분 | 사용금액 | 제외금액 |
|----|-----|----|-------|------------|-----------|
| > | 김국세 | 본인 | 국세청자료 | 35,000,000 | 5,000,000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1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중 |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금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공제항목 | 금액 |
|-------------|------------|
| 신용카드 | 15,000,000 |
| 직불카드 | 5,000,000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도서공연등사용분 | 1,450,000 |
| 전통시장사용분 | 0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전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당해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 당해년도전체사용분 | 26,350,000 |

1 신용카드등 - 대중교통이용분 설명

-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직불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 사용금액연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을 상반기(1-6), 하반기(7-12)로 분할하여 입력합니다.
> 상반기(1-6): 귀속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하반기(7-12): 귀속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 공제금액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상반기(1월-6월) 이용금액 * 40%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하반기(7월-12월) 이용금액 * 80%

| No | 성명 | 관계 | 자료구분 | 항목구분 | 사용금액 | 제외금액 |
|----|-----|----|-------|-----------|---------|------|
| > | 김국세 | 본인 | 국세청자료 | 하반기(7-12) | 400,000 | 0 |
| 2 | 김국세 | 본인 | 국세청자료 | 상반기(1-6) | 500,000 | 0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 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 되며 부양가족과 자료구분 사용기간을 선택하고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보다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추가공제 함에 따라 전년도전체사용분에 사용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신용/직불/현금영수증)의 경우 상·하반기 공제되는 요율이 다르기에 분할하여 입력합니다.
- 부양관계가 형제자매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사용금액을 입력 할 경우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모두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합니다.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종: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공제항목 | 금액 |
|----------------|------------|
| 신용카드 | 15,000,000 |
| 직불카드 | 5,000,000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도서공연동사용분 | 1,450,000 |
| 신용카드등 | |
| 신용카드 | 15,000,000 |
| 직불카드 | 5,000,000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도서공연동사용분 | 1,450,000 |
| 신용카드등 | 0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전년도전체사용분 | 0 |
| 당해년도전체사용분 | 0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 당해년도전체사용분 | 26,350,000 |
| 신용카드등 총액 | 26,350,000 |
| 개인연금저축 | 0 |
| 주택마련저축 | 0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0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0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0 |
| 고용유지용소기업근로자 | 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0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0 |
| 그밖의소득공제 총액 | 26,350,000 |

신용카드등 - 전년도전체사용분 설명

- 전년도 신용카드등 총 사용금액
- 공제금액: 귀속연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전년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105%)

| No | 성명 | 관계 | 자료구분 | 사용금액 | 제외금액 |
|----|-----|----|-------|------------|-----------|
| > | 김국세 | 본인 | 국세청자료 | 35,000,000 | 5,000,000 |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사원: 김국세

| No | 성명 | 자료구분 | 항목구분 | 사용금액 | 제외금액 |
|----|-----|-------|-----------|------------|-----------|
| > | 김국세 | 국세청자료 | 전년도전체사용금액 | 35,000,000 | 5,000,000 |
| 총액 | | | | 35,000,000 | 5,000,000 |

주의 사항

- 선택한 사원에 전년도 사용분중 제외금액만 자동 반영시켜 줍니다.
- 국세청간소화 업로드 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업로드시 초기화됨)
- 금액확인 후 신용카드등 항목에서 직접 조정하셔도 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일한 주민번호/자료구분 데이터로만 반영됩니다.

제외금액반영 닫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전년도전체사용분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말정산시 신고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제외금액'을 제공합니다.
- ※ 선택한 사원의 전년도 사용분 중 제외금액만 자동 반영시켜 줍니다.
- 당해년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년도전체사용분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정 가능함)
- 중도입사자와 같이 당해년도전체사용분을 별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력된 신용카드 내역은 반드시 저장 이후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 당해년도 전체사용분 수정후 다시 신용카드 내역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재집계 되니 사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중 |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국재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중천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 | |
|-------------------|-------------------|-------------------|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 15,000,000 |
| | 직불카드 | 5,000,000 |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 도서공연등사용분 | 1,450,000 |
| | 전통시장사용분 | 0 |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 전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 당해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 | 당해년도전체사용분 | 26,350,000 |
| | 신용카드등 총액 | 26,350,000 |
| | 개인연금저축 | 1,000,000 |
| 주택미련저축 | 4,000,000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1,000,000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1,500,000 | |
| 우려사후조합출연금 | 500,000 |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400,000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3,000,000 | |
| 청년성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000,000 | |
| 그밖의소득공제 총액 | 38,750,000 | |
| 국민연금 | 1,200,000 | |

개인연금저축 설명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 No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대상금액 |
|-----------|-------|------------|------------------|
| > | 세마을금고 | 1111111111 | 1,000,000 |
| 총액 | | | 1,000,000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 불입액을 입력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되며, 관리항목,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금액 : 연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 ※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
+
-
x
y
z
*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중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마감관련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중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구분 | 내역 | 금액 |
|--------------------|-------------------|-------------------|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 15,000,000 |
| | 직불카드 | 5,000,000 |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 도서공연동사용분 | 1,450,000 |
| | 전통시장사용분 | 0 |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 전년도전동시장사용분 | 0 |
| | 당해년도전동시장사용분 | 0 |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 | 당해년도전체사용분 | 26,350,000 |
| 신용카드등 총액 | 26,350,000 | |
| 개인연금저축 | | 1,000,000 |
| 주택마련저축 | | 4,000,000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 1,000,000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1,500,000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500,000 |
| 고용유지충소기업근로자 | | 400,00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3,000,000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1,000,000 |
| 그밖의 소득공제 총액 | | 38,750,000 |

1 주택마련저축 설명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의 총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하여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②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2014년 이전 가입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공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연 납입액 120만원한도)

-2015년 이후 가입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No | 관리항목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대상금액 |
|-----------|-----------|-----------|------------|------------------|
| > | 청약저축 | 세마을고교 | 2222222222 | 1,000,000 |
| 2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협동조합 | 3333333333 | 1,000,000 |
| 3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신한금융투자(주) | 4444444444 | 2,000,000 |
| 총액 | | | | 4,000,000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을 청약저축, 주택청약,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 되며, 관리항목,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합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①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하여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②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2014년 이전 가입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공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연 납입액 120만원한도)
- 2015년 이후 가입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들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 기부금명세 종전근무지 연말정산명세

| 구분 | 내역 | 금액 |
|---------------------|------------------|-------------------|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 15,000,000 |
| | 직불카드 | 5,000,000 |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 도시공영등사용분 | 1,450,000 |
| | 전통시장사용분 | 0 |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 전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 당해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 | 당해년도전체사용분 | 26,350,000 |
| 신용카드등 총액 | | 26,350,000 |
| 개인연금저축 | 1,000,000 | |
| 주택마련저축 | 4,000,000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1,000,000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1,500,000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500,000 |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400,000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3,000,000 |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000,000 | |
| 기타소득공제 총액 | | 28,750,000 |

그밖의 소득공제 설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지만 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인 사업자와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대표자가 가입 가능**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분 500만원, 1억원 이하분 300만원, 1억원 초과분 200만원

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③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금액계산: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x 50%
 - 공제한도: 1천만원

| 공제항목 | 금액 | 가입일자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1,000,000 | 2022-01-01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500,000 |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400,000 | |

그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납부액을 입력합니다.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연 200만원)
- 단, 2016.1.1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일반기업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삭감액을 입력합니다. (임금삭감액의 50%를 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중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마감권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 기부금명세 종전근무지 연말정산명세

| | | |
|-------|-----------------|-------------------|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 15,000,000 |
| | 직불카드 | 5,000,000 |
| | 현금영수증 | 4,000,000 |
| | 도서공연등사용분 | 1,450,000 |
| | 전통시장사용분 | 0 |
| | 대중교통이용분 | 900,000 |
| | 전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 당해년도전통시장사용분 | 0 |
| | 전년도전체사용분 | 30,000,000 |
| | 당해년도전체사용분 | 26,350,000 |
| | 신용카드등 총액 | 26,350,000 |

그밖의 소득공제

| | |
|-----------------------|-------------------|
| 개인연금저축 | 1,000,000 |
| 주택마련저축 | 4,000,000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1,000,000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1,500,000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500,000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400,00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3,000,000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000,000 |
| 가바이스드코퍼레이션 | 38,750,000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금액 설명

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 2016년부터 농특세 과세대상 제외

| 연도 | 투자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입력금액 |
|-----------|------|---------------|------------|------------------|
| 2022년 | 조합2 |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 6666666666 | 1,500,000 |
| 총액 | | | | 1,500,000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되며, 연도를 입력하면 투자구분선택 도움창에 해당되는 투자구분을 선택한 후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투자금액을 입력합니다.
- 1.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50%한도
- 2. 공제율: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조합1, 조합2)개인이 직접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70%, 30%)로 공제
- * 해당하는 투자구분이 '조합2'로 입력한 납입액은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i
+
-
x
y
z
*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업중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귀속연도
2022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
기부금명세
중진근무지
연말정산명세

| |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1,500,000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500,000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400,000 |
| 장기집합투자증권투자 | 3,000,000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투자 | 1,000,000 |
| 그밖의소득공제 총액 | 38,750,000 |
| 국민연금 | 1,200,000 |
| 공적연금 | 0 |
| 공무원 | 0 |
| 군인 | 0 |
| 사립학교 | 0 |
| 별정우체국 | 0 |
| 공적연금 총액 | 0 |
| 연금보험 총액 | 1,200,000 |
| 보험료 | 0 |
| 건강보험료 | 1,080,000 |
| 고용보험료 | 412,800 |
| 보험료 총액 | 1,492,800 |
| 주택자금 | 0 |
| 주택임차대입금 | 0 |
| 장기주택저당대입금 | 0 |
| 주택자금 총액 | 0 |
| 특별소득공제 총액 | 1,492,800 |

연금보험료공제 설명

가주자가 공적연금 권원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다만,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제외**

- 국민연금: 급여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 국민연금(지역): 지역의료보험등에 납부한 연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군인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공제항목 | 금액 | | | |
|------------|------------------|----------|----------|------------------|
| | 원근무지 | 중진근무지 | 추가 | 합계 |
| 국민연금 | 1,200,000 | 0 | 0 | 1,200,000 |
| 국민연금(지역) | 0 | 0 | 0 | 0 |
| 공무원연금 | 0 | 0 | 0 | 0 |
| 군인연금 | 0 | 0 | 0 | 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0 | 0 | 0 | 0 |
| 별정우체국연금 | 0 | 0 | 0 | 0 |
| 합 계 | 1,200,000 | 0 | 0 | 1,200,000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

- 2022년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산 금액이 자동 반영 됩니다.

■ 국민연금지역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직접 입력 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각 연금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금액을 직접 입력 합니다.

※ 공제한도는 전액 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구분: 계속근로자 | 귀속연도: 2022 | 사번: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로지 | 연말정산명세

| | |
|-------------------|-------------------|
| 주택마련저축 | 4,000,000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1,000,000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1,500,000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500,000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400,00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3,000,000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000,000 |
| 그밖의소득공제 총액 | 38,750,000 |

연금보험료공제

| | |
|----------------|------------------|
| 국민연금 | 1,200,000 |
| 공직연금 | 0 |
| 공적연금 | 0 |
| 사립학교 | 0 |
| 별칭우체국 | 0 |
| 공적연금 총액 | 0 |
| 연금보험 총액 | 1,200,000 |

특별소득공제

| | |
|------------------|------------------|
| 보험료 | 1,080,000 |
| 고양보험료 | 412,800 |
| 보험료 총액 | 1,492,800 |
| 주택자금 | 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0 |
| 주택자금 총액 | 0 |
| 특별소득공제 총액 | 1,492,800 |

보험료 설명

①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한도: 전액 공제

②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제한도: 전액 공제

| 공제항목 | 금액 | | | 합계 |
|--------------|------------------|----------|----------|------------------|
| | 현근무지 | 종전근무지 | 추가 | |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1,080,000 | 0 | 0 | 1,080,000 |
| 고용보험 | 412,800 | 0 | 0 | 412,800 |
| 합 계 | 1,492,800 | 0 | 0 | 1,492,800 |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2년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 금액이 자동 반영 됩니다.

■ 고용보험

• 2022년 급여에서 공제된 고용보험, 고용보험정산 금액이 자동 반영 됩니다.

※ 공제한도는 전액 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 🗑️ 📄 🏠

▶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미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업중 | 전년도신용카드등전체사용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 매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한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중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연말정산내역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미연저축 | 4,000,000 | <div style="font-size: 12px; margin-bottom: 5px;">·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10px;"> <thead> <tr> <th colspan="2">공제항목</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대출기간</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td> </tr> </tbody> </table> <div style="font-size: 12px; margin-bottom: 5px;">·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div> <div style="font-size: 12px; margin-bottom: 5px;">1.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px;"> <thead> <tr> <th rowspan="2">No</th> <th rowspan="2">대주</th> <th rowspan="2">주민등록번호</th> <th colspan="2">계약기간</th> <th rowspan="2">차입금 이자율 (%)</th> <th rowspan="2">임대차금액</th> <th rowspan="2">상환원금</th> <th rowspan="2">상환이자</th> </tr> <tr> <th>시작일</th> <th>종료일</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 height: 40px;">데이터가 없습니다.</td> </tr> </tbody> </table> <div style="font-size: 12px; margin-bottom: 5px;">2.임대차 계약내용</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px;"> <thead> <tr> <th rowspan="2">No</th> <th rowspan="2">임대인 성명</th> <th rowspan="2">사업자 여부</th> <th rowspan="2">사업자등록번호</th> <th rowspan="2">주민등록번호</th> <th colspan="2">계약기간</th> <th rowspan="2">주택유형</th> <th rowspan="2">주택계약 면적(m²)</th> <th rowspan="2">우편번호</th> <th rowspan="2">기본주소</th> <th rowspan="2">세부주소</th> <th rowspan="2">전세보증금</th> </tr> <tr> <th>시작일</th> <th>종료일</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3" style="text-align: center; height: 40px;">데이터가 없습니다.</td> </tr> </tbody> </table> | 공제항목 | | 금액 | 대출기간 | | 2,000,000 | No | 대주 |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 | 차입금 이자율 (%) | 임대차금액 | 상환원금 | 상환이자 | 시작일 | 종료일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 | | | | | | No | 임대인 성명 | 사업자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 | 주택유형 | 주택계약 면적(m ²)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세부주소 | 전세보증금 | 시작일 | 종료일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 | | | | | | | | | |
| 공제항목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기간 | | | 2,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 대주 | |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 | 차입금 이자율 (%) | 임대차금액 | 상환원금 | 상환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 임대인 성명 | | 사업자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 | 주택유형 | 주택계약 면적(m ²)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세부주소 | 전세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수상공인공제부금 | 1,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1,5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사우조합출연금 | 5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4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3,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밖의소득공제 총액 | 38,7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금보험료공제 | | <div style="font-size: 12px; margin-bottom: 5px;">국민연금</div> | 구분 | 금액 | 공무원 | 0 | 군인 | 0 | 사립학교 | 0 | 별정우체국 | 0 | 공적연금 총액 | 0 | 연금보험 총액 | 1,200,000 | 구분 | 금액 | 건강보험료 | 1,080,000 | 고용보험료 | 412,800 | 보험료 총액 | 1,492,800 | 구분 | 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 2,000,0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0 | 주택자금 총액 | 2,000,000 | 특별소득공제 총액 | 3,492,800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인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립학교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정우체국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적연금 총액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금보험 총액 | 1,2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1,08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412,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 총액 | 1,492,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임차차입금 | 2,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자금 총액 | 2,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소득공제 총액 | 3,492,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원리금 상환액 40%, 연 공제한도 400만원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하여 연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대출기간 및 구분(관리항목)에 따라 (600만원한도), (1,000만원한도), (1,500만원한도), (1,800만원한도)로 공제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주택마련 저축납입액 공제) 금액이 해당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공제항목 | 금액 |
|------------------|------------------|
| 보장성 보험료 | 1,000,000 |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0 |
| 보장성보험료 총액 | 1,000,000 |
| 의료비 | 6,000,000 |
| 본인·65세·장애·특례 | 6,000,000 |
| 난임시술비 | 0 |
| 마속아·신신성이상아 | 0 |
| 그밖의공제대상자 | 0 |
| 의료비 총액 | 6,000,000 |
| 교육비 | 2,000,000 |
| 소득자본인 | 2,000,000 |
| 취학전아동 | 0 |
| 초·중·고등학교 | 0 |
| 대학교 | 0 |
| 장애인특수 | 0 |
| 교육비 총액 | 2,000,000 |
| 기부금 | 0 |
| 정치자금 | 0 |
| 법정 | 0 |
| 우리사주조합 | 0 |
| 지정(중고단체인) | 0 |
| 지정(중고단체) | 0 |
| 기부금 총액 | 0 |
| 특별세액공제 총액 | 9,000,000 |

보장성보험료 설명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①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 보험(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제외)의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 한도)의 12%를 공제
 ②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를 공제
 ※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 No | 성명 | 관계 | 보험종류 | 자료구분 | 대상금액 |
|-----------|-----|----|-------|-------|------------------|
| > | 김국세 | 본인 | 보장성보험 | 국세청자료 | 1,000,000 |
| 총액 | | | | | 1,000,000 |

보장성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입력 합니다.

- ①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 보험(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제외)의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 한도)의 12%를 공제
- ②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를 공제

※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
🌐
🔍
🗑️
🖨️
📄
★

!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업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로자
귀속연도 2022
사원 김국세

기본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
기부금명세
종전근로지
연말정산명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No | 의료비공제대상자 | | | 지급처 | | | 지급명세 | | | | | | |
|----|---|----|-------|------------|-----|--------------|-------|----|-----------|-------------|--------------------------|--------------------------|--------------------------|
| | 성명 | 관계 | 자료구분 | 의료 종별코드 | 성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의료비구분 | 건수 | 금액 | 실손 의료보험금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해당여부 | 난임시술 해당여부 | 건강보험 특례자여부 |
| > | 김국세 | 본인 | 국세청자료 | 1 | 지급처 | 111-11-11111 | 의료비 | 1 | 6,000,000 | 0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6,000,000 | 0 | | | |

! 의료비지급명세서 설명

- 세액공제금액 : 난임시술비 + 본인·65세·장애·특례 + 그밖의 의료비 - 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3%)
 -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①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② 본인·65세·장애·특례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③ 그밖의 의료비 :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의료비 총 사용금액이 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x3%) 이하인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

- 의료비 금액란 클릭하면 의료비 지급명세 탭으로 이동하고, 의료비 지급명세 탭에서 지출내용을 입력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 되며 의료비공제대상자 선택하고 지급처, 지급명세를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금액 : 난임시술비 + 본인·65세이상·장애인 + 그밖의 의료비 - 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3%)
 -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①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 ② 본인·65세이상·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 ③ 그밖의 의료비 :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④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 난임시술 해당여부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여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송한 자료의 해당 여부는 별도 입력 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해당여부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여부 그리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여부의 해당/비해당 설정을 합니다.
 해당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설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미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관: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공제항목 | 금액 |
|------------------|------------------|
| 보장성 보험료 | 1,000,000 |
| 장애인장해보장성 | 0 |
| 보장성보험료 총액 | 1,000,000 |
| 의료비 | |
| 본인·65세·장애·특례 | 6,000,000 |
| 난임시술비 | 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0 |
| 그밖의공제대상자 | 0 |
| 의료비 총액 | 6,000,000 |
| 소득자본인 | 2,000,000 |
| 취학전아동 | 0 |
| 교육비 | |
| 초·중·고등학교 | 0 |
| 대학교 | 0 |
| 장애인특수 | 0 |
| 교육비 총액 | 2,000,000 |
| 기부금 | |
| 정치자금 | 0 |
| 법정 | 0 |
| 우리사주조합 | 0 |
| 지정(중고단체외) | 0 |
| 지정(중고단체) | 0 |
| 기부금 총액 | 0 |
| 특별세액공제 총액 | 9,000,000 |

교육비 설명

① 근로자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전액
 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교 공제대상금액 한도: 연 300만원
 ③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한도: 연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 No | 성명 | 관계 | 교육비종류 | 자료구분 | 대상금액 |
|----|-----|----|-------|-------|-----------|
| > | 김국세 | 본인 | 본인 | 국세청자료 | 2,000,000 |

교육비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되며 부양가족과 교육비종류, 자료구분을 선택하고 대상금액을 입력합니다.

- ① 근로자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 전액
- 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교** 공제대상금액 한도 : 연 300만원
- ③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한도 : 연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미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별: 김국세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해당 연도 기부 명세

| No | 자료구분 | 구분 코드 | 유형 | 기부구분 | 기부내용 | 기부처 | | | 기부자 | | | 건수 | 총액 | 기부명세 | | 기부정려금 신청금액 |
|----|---|-------|---------|------|------|---------------|-----------|--------------|-----|----|-----------|----|---------|------------|---|------------|
| | | |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주인)구분 | 사업자(주인)등록번호 | 성명 | 관계 | 공제대상 기부금액 | | | 기부정려금 신청금액 |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밖의자료 | 40 | 지정기부금 | 금전 | | 하나전기 제1사업장(인) | 사업자번호 | 111-11-11118 | 김국세 | 본인 | | 1 | 72,000 | 72,000 | | 0 |
| 2 | <input type="checkbox"/> 그밖의자료 | 41 | 종교단체기부금 | 금전 | | 하나전기 제1사업장(인) | 사업자번호 | 111-11-11118 | 김국세 | 본인 | | 1 | 60,000 | 60,000 | | 0 |
| 3 | <input type="checkbox"/> 국제정치자료 | 20 | 정치자금 | 금전 | | 기부금 | 사업자번호 | 111-11-11119 | 김국세 | 본인 | | 1 | 150,000 | 150,000 | | 0 |
| 총액 | | | | | | | | | | | | 3 | 282,000 | 282,000 | 0 | |

기부금 조정 명세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총액(공제대상 기부금액 총액)

| No | 코드 | 구분 유형 | 기부연도 | 17.기부금액 | 18.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19.공제대상금액 (17-18)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실세액공제금액 | | |
|----|----|---------|------|---------|----------------|-------------------|-----------|-------------------|---------|---------|---|---|
| | | | | | |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 |
| > | 20 | 정치자금 | 2022 | 150,000 | 0 | 150,000 | 0 | 0 | 0 | 0 | | |
| 2 | 40 | 지정기부금 | 2022 | 72,000 | 0 | 72,000 | 0 | 0 | 0 | 0 | | |
| 3 | 41 | 종교단체기부금 | 2022 | 60,000 | 0 | 60,000 | 0 | 0 | 0 | 0 | | |
| 총액 | | | | | | | 282,000 | 0 | 282,000 | 0 | 0 | 0 |

기부금명세

- 기부금 금액란을 클릭하면 기부금명세 탭으로 이동하고, 기부금명세 탭에서 지출내용을 입력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 되며 구분, 기부처, 기부자, 기부명세를 입력합니다.
 - 기부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 공제 대상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연도 기부명세를 입력하고 기부금조정명세에 반영 버튼을 필히 클릭해야 당해연도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10만원 이하분 금액과 10만원 초과분 금액이 분리되어 기부금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귀속 21~22년도 기부금에 한하여 5%p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1천만원이하 : 20%, 1천만원초과분 35%)

※ 실 세액공제 금액은 사용자마감이 되어야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 우선순위 | 기부금공제순서 |
|------|---------------------------------------|
| 1순위 | 2013.12.31 이전 지출한 이월 법정기부금(소득공제) |
| 2순위 | 2013.12.31 이전 지출한 이월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
| 3순위 | 2013.12.31 이전 지출한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소득공제) |
| 4순위 | 당해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 |
| 5순위 | 2014.1.1 이후 지출한 이월 법정기부금 |
| 6순위 | 당해 지출한 법정기부금 |
| 7순위 | 당해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8순위 | 2014.1.1 이후 지출한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9순위 | 당해 지출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10순위 | 2014.1.1 이후 지출한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 11순위 | 당해 지출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공제순서

• 기부금 소득. 세액공제 순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이전 지급한 기부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소득공제 대상인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대상인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 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 연금계좌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연발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 | |
|-----------|------------------|---|
| 기부금 | 정치자금 | 0 |
| | 법정 | 0 |
| | 우려사후조급 | 0 |
| | 지정(종교단체) | 0 |
| | 지정(종교단체) | 0 |
| 기부금 총액 | | 0 |
| 특별세액공제 총액 | | 0 |
|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0 |
| | 퇴직연금 | 0 |
| | 연금저축 | 0 |
| | ISA-개인연금추가납부 | 0 |
| | ISA-퇴직연금추가납부 | 0 |
| 연금계좌 총액 | | 0 |
| 세액감면 | 소득세법 | 0 |
| | 조세특례제한법(세30조 제외) | 0 |
| | 조세특례제한법(세30조) | 0 |
| | 조세조약 | 0 |
| 세액감면 총액 | | 0 |
| 기타 | 납세조합공제 | 0 |
| | 주택저당금이자상환액 | 0 |
| | 외국납부세액 | 0 |
| 기타 총액 | | 0 |

연금계좌 설명

①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②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③ 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 700만원 한도(연제)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한도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총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No | 관리항목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대상금액 |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 | |

연금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불입액, 연금저축 납입액, ISA-개인연금추가납부, ISA-퇴직연금추가납부를 각 계좌별로 입력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 되며 관리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상금액을 입력합니다.

- ①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②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 ③ 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④ ISA-개인연금추가납부, ISA-퇴직연금추가납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천만원 이하는 15%)
 -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단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단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동일한다)
- ISA-개인연금추가납부, ISA-퇴직연금추가납부(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
 - *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한도)의 12%

세액공제 - 세액감면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마감리더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연발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 | | |
|-----------|------------------|---|---|
| 기부금 | 정치자금 | 0 | 소득세법 - 정부간협약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조세조약 - 원어민 교사 |
| | 법정 | 0 | |
| | 우리서우조합 | 0 | |
| | 지정(종교단체외) | 0 | |
| | 지정(종교단체) | 0 | |
| 기부금 총액 | | 0 | |
| 특별세액공제 총액 | | 0 | |
|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0 | 정무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 | 퇴직연금 | 0 | |
| | 연금저축 | 0 | |
| | ISA-개인연금추기납부 | 0 | |
| | ISA-퇴직연금추기납부 | 0 | |
| 연금계좌 총액 | | 0 | |
| 세액감면 | 소득세법 | 0 | 감면세액: 0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 0 | 감면시작일: []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0 | 감면종료일: [] |
| | 조세조약 | 0 | |
| | 세액감면 총액 | 0 | |
| 기타 | 납세조합공제 | 0 | |
| | 주택지입금이자상환액 | 0 | |
| | 외국납부세액 | 0 | |
| | 월세액 | 0 | |
| 기타 총액 | | 0 | |

세액감면

-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으로 구분됩니다.
-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과 감면대상금액, 감면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 소득세법 - 정부간협약 또는 기술도입계약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입력합니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 외국인기술자 감면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x 50%

■ 조세조약 - 원어민 교사

-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교사 및 교수로서 초·중·고교와 같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 - 세액감면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연말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소득세법 - 정부간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조세조약 - 원어민 교사

| | | |
|----------------------|---|--|
| 정착자금 | 0 | 소득세법 - 정부간협약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조세조약 - 원어민 교사 -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014.1.1.~2015.12.31. 취업자 감면율: 50% 2016.1.1.~2018.12.31. 취업자 감면율: 70% 감면세액: [산출세액(근로소득) × (5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50%]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7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70%], 150만원} - 청년 감면율: 90% 감면세액: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 각 항목의 감면세액은 연말정산자료입력(관리자)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
| 법정 | 0 | |
| 기부금 | 0 | |
| 우리스후조합 | 0 | |
| 지정(종교단체외) | 0 | |
| 지정(종교단체) | 0 | |
| 기부금 총액 | 0 | |
| 특별세액공제 총액 | 0 | |
| 연금계좌 | 0 | |
| 개학기술훈공제 | 0 | |
| 퇴직연금 | 0 | |
| 연금저축 | 0 | |
| ISA-개인연금추가납부 | 0 | |
| ISA-퇴직연금추가납부 | 0 | |
| 연금계좌 총액 | 0 | |
| 세액감면 | 0 | 감면대상금액(50%) <input type="text" value="0"/> 감면대상금액(70%) <input type="text" value="0"/> 감면대상금액(90%) <input type="text" value="0"/> 감면기간시작일 <input type="text"/> 감면기간종료일 <input type="text"/> 취업일 <input type="text"/> 종료일 <input type="text"/> |
| 소득세법 | 0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 0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0 | |
| 조세조약 | 0 | |
| 세액감면 총액 | 0 | |
| 가타 | 0 | |
| 납세조합공제 | 0 | |
| 주택지급금이자상환액 | 0 | |
| 외국납부세액 | 0 | |
| 필세액 | 0 | |
| 기타 총액 | 0 | |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은 15세~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 입사년월에 따라 감면대상 총급여액 100%, 50%, 70%(한도 150만원), 90%(한도15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 2017년 귀속 개정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2017.1.1. 이후 입사자 부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감면율에 의한 감면대상금액은 자동 반영 되며, 감면기간과 취업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014.1.1.~2015.12.31. 취업자 감면율: 50%

2016.1.1.~2018.12.31. 취업자 감면율: 70%

감면세액 : [산출세액(근로소득) × (5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50%]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7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70%], 150만원}

· 청년

감면율 : 90%

감면세액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 각 항목의 감면세액은 연말정산자료입력(관리자)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 기타세액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연발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 |
|------------------|---|
| 정치자금 | 0 |
| 법정 | 0 |
| 기부금 | 0 |
| 우리카주조합 | 0 |
| 지정(종교단체외) | 0 |
| 지정(종교단체) | 0 |
| 기부금 총액 | 0 |
| 특별세액공제 총액 | 0 |
| 대학기술투입공제 | 0 |
| 퇴직연금 | 0 |
| 연금저축 | 0 |
| ISA-개인연금주기납부 | 0 |
| ISA-퇴직연금주기납부 | 0 |
| 연금계좌 총액 | 0 |
| 소득세법 | 0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 0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0 |
| 조세조약 | 0 |
| 세액감면 총액 | 0 |
| 납세조합공제 | 0 |
|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 0 |
| 외국납부세액 | 0 |
| 월세액 | 0 |
| 기타 총액 | 0 |

기타세액공제 설명

①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②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차입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③ 외국납부세액: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으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항목 | 금액 |
|------------|----|
| 납세조합공제 | 0 |
|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 0 |

외국납부세액

| | |
|---------|---|
| 외국납부세액 | 0 |
| 국외원천소득 | 0 |
| 외화납세액 | 0 |
| 원화납세액 | 0 |
| 근무기간시작일 | |
| 근무기간종료일 | |
| 납부일 | |
| 산정세출일 | |
| 납세국명 | |
| 국외근무처 | |
| 직책 | |

기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995.11.01~1997.12.31'기간 중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제한도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공제

■ 외국납부세액

-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입력합니다.
- 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 - 기타세액공제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 귀속연도: 2022 | 사원: 김사원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중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 | |
|-----------|------------------|---|
| 기부금 | 법정 | 0 |
| | 우리카주조합 | 0 |
| | 지정(종교단체외) | 0 |
| | 지정(종교단체) | 0 |
| 기부금 총액 | | 0 |
| 특별세액공제 총액 | | 0 |
|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0 |
| | 퇴직연금 | 0 |
| | 연금저축 | 0 |
| | ISA-개인연금추가납부 | 0 |
| | ISA-퇴직연금추가납부 | 0 |
| 연금계좌 총액 | | 0 |
| 세액감면 | 소득세법 | 0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 0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0 |
| | 조세조약 | 0 |
| 세액감면 총액 | | 0 |
| 기타 | 납세조합공제 | 0 |
| | 주택지입금이자상환액 | 0 |
| | 외국납부세액 | 0 |
| 합세액 | | 0 |
| 기타 총액 | | 0 |

월세액 설명

-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x 10%

| No | 임대인 성명 | 사원자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번호 | 계약기간 | | 주택유형 | 주택계약 면적(㎡) | 유련 번호 | 기본주소 | 세부주소 | 연간월세액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기타세액공제

▣ 월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7%, 7천만원이하 15%
- 공제한도 : 연 750만원 한도

종전근무지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x]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i
globe
print
refresh
close
star

1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업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마감관리

정산구분 계속근무지
귀속연도 2022
사원 김연발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 | 기부금명세 | 종전근무지 | 연말정산명세

| No | 근무지정보 | | | 귀속기간 | | 감면기간 | | 종교인 종사여부 |
|--|-------|-----|---------|------|-----|------|-----|-------------|
| | 구분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시작일 | 종료일 | 시작일 | 종료일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데이터가 없습니다. </div> | | | | | | | | |

소득명세 및 보험료 | 비과세소득 | 연금계좌

| 구분 | 공제항목 | 금액 | 구분 | 공제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 | 급여 | 0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0 |
| | 상여 | 0 | | 국민연금(지역) | 0 |
| | 안정상여 | 0 | | 공무원연금 | 0 |
| | 주식배수선택권행사이익 | 0 | | 군인연금 | 0 |
| |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0 | | 별정우체국연금 | 0 |
| | 임원퇴직소득금액원도초과액 | 0 | | 사람학교 교직원연금 | 0 |
| | 직무발령보상금 | 0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0 | |
| 소계 | 0 | 보험료 | 고용보험 | 0 | |
| 구분 | 공제항목 | 금액 | | | |
| 결정세액(기납부) | 소득세 | 0 | | | |
| | 지방소득세 | 0 | | | |
| | 농어촌특별세 | 0 | | | |
| 소계 | 0 | 총액 | 0 | | |

주전근무지

- 총액 0 - 소득세 0
- 지방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0

종전근무지

- 총액 0 - 소득세 0
- 지방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0

납세조합근무지

- 총액 0 - 소득세 0
- 지방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0

22 근무지 총계

- 총액 0 - 소득세 0
- 지방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0

1 종전근무지 설명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납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종전근무지

-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납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추가되며 종전 근무지의 근무지정보와 귀속기간, 감면기간과 하단의 소득명세 및 보험료, 비과세소득, 연금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70

II. 연말정산[사용법]

연말정산명세

◆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 | | | | | | | | | | |
|--|--------------|-----------|------------|---------|----------------|----------------------|--|-----------|------------|-----|--|
| 당해연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마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 | | | | | | | | |
| 정산구분 | | 계속근무자 | | 귀속연도 | | 2022 | | 사원 | | 김연발 | |
| 기본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 기부금명세 종전근무지 연말정산명세 | | | | | | | | | | | |
| 정산항목 | | | 금액 | | | 정산항목 | | | 금액 | | |
| 21.총급여(16.다만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 | | 63,000,000 | | | 48.총합소득 과세표준 | | | 47,063,000 | | |
| 22.근로소득공제 | | | 12,900,000 | | | 49.신출세액 | | | 6,075,120 | | |
| 23.근로소득금액 | | | 50,100,000 | | | 50.「소득세법」 | | | 0 | | |
| 기본공제 | 24.본인 | | 1,500,000 | | | 51.「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 | | 0 | | |
| | 25.배우자 | | 0 | | | 52.「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 0 | | |
| | 26.부양가족 (0명) | | 0 | | | 53.조세조각 | | | 0 | | |
| | 27.경로우대 (0명) | | 0 | | | 54.세액감면 계 | | | 0 | | |
| | 28.장애연 (0명) | | 0 | | | 55.근로소득 | | | 660,000 | | |
| | 29.부녀자 | | 0 | | | 56.지내 | | | 0 | | |
| | 30.완부모가족 | | 0 | | | 공제대상지내 (0명) | | | 0 | | |
| | 국민연금보험료 | | 550,000 | | | 출산·입양자 (0명) | | | 0 | | |
| | 공제금액 | | 550,000 | | | 57.귀속기술인공제 | | | 0 | | |
| | 연공보합료 | | 0 | | | 공제대상금액 | | | 0 | | |
| 32. 퇴직연금 | | 0 | | | 세액공제액 | | | 0 | | | |
| 공적 | | 0 | | | 58 「근로복지기금법」 제 | | | 0 | | | |
| 대상금액 | | 0 | | | 공제대상금액 | | | 0 | | | |
| 공제금액 | | 0 | | | | | | | | | |
| 32. 퇴직연금 | | 0 | | | | | | | | | |
| 공적 | | 0 | | | | | | | | | |
| 대상금액 | | 0 | | | | | | | | | |
| 공제금액 | | 0 | | | | | | | | | |
| 구분 | | 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농어촌특별세 | | 총액 | | | |
| III 세액명세 | | 5,415,120 | | 541,512 | | 0 | | 5,956,632 | | | |
| 기납부세액 | | 0 | | 0 | | 0 | | 0 | | | |
| 납부특례세액 | | 0 | | 0 | | 0 | | 0 | | | |
| 지감징수세액 | | 5,415,120 | | 541,510 | | 0 | | 5,956,630 | | | |

연말정산명세

- 해당 탭에서 입력한 지출내역에 대한 공제 금액이 계산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마감 : 화면 상단에 사용자마감이라는 표시가 되고 입력한 공제자료등을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마감취소 : 마감된 자료에 대해서만 취소가능하고, 공제자료등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명세

◆메뉴: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마감

김연말님의 일반 공제와 표준 공제를 비교한 결과 [일반 공제] 가 유리합니다.

일반공제 표준공제

| 정산항목 | 수식 | 일반공제금액 | 표준공제금액 |
|-----------------|----|------------|------------|
| 총급여액 | ≡ | 63,000,000 | 63,000,000 |
| 근로소득공제 | - | 12,900,000 | 12,900,000 |
| 근로소득금액 | ≡ | 50,100,000 | 50,100,000 |
| 종합소득공제 | - | 987,000 | 0 |
| 그밖의소득공제 | - | 0 | 0 |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 + | 0 | 0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 47,063,000 | 48,050,000 |
| 산출세액 | - | 6,075,120 | 6,312,000 |
| 세액공제 | - | 660,000 | 790,000 |
| 결정세액 소득세 | ≡ | 5,415,120 | 5,522,000 |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 + | 541,512 | 552,200 |
| 기납부세액 소득세 | - | 0 | 0 |
|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 - | 0 | 0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5,956,630 | 6,074,200 |

! 각종 신고관련 DATA의 적법성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명세서 및 신고서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입력 결과에 따른 각종 문서 및 신고서의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사용자가 직접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력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세액공제 설명

특별소득공제(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기부금)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 마감 절차

일반 공제와 표준 공제의 금액을 확인 후 원하는 항목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닫기

데이터검증 및 마감

- 사용자 마감 버튼 클릭 시 실행됩니다.
- 일반공제금액과, 표준세액공제 별로 각각 시뮬레이션 된 계산내역이 보여지며, 결정 세액이 적은 쪽으로 자동 반영 되고 사용자가 직접 선택 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기부금)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 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입력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정산명세'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공제 항목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버튼안내

◆메뉴: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National Tax Simplified Input) menu. A modal window titled '국세청 PDF 업로드' (Upload National Tax PDF) is open, featuring a '파일선택' (File Selection) button and a '비밀번호' (Password) field. Below these fields is a '참고사항' (Notes) section with the following text: '불러오기할 서식을 선택한 다음 국세청 PDF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PDF파일은 1개씩 업로드 가능합니다.' (After selecting the format to be downloaded, please upload the National Tax PDF file. Only one National Tax PDF file can be uploaded.) The modal also includes '적용' (Apply) and '닫기' (Close) buttons. The background interface shows a table of employee information and a summary of tax amounts, with a '국세청자료열기' (Open National Tax Data) button highlighted in the top right.

메뉴 안내

- '정산구분' 및 '귀속연도' 확인 후 사원을 선정합니다.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사용자)]메뉴의 부양가족 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정보가 없으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자료열기
 - 사원의 소득공제항목에 대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놓은 PDF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자료반영
 - 간소화 업로드 이후 '연말정산자료반영' 버튼을 통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 및 (사용자)]메뉴로 데이터가 이관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메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0.사원별 요약 | | | | I.근로소득지급명세 | | | II.비과세소득 | | | III.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 | | | | |
|--------------------------|------------|------|---------|------------|---------|-------------------|--------------------|----------------------|----------|------------------|----------------|----------|----------------|----------------|----------------|
| 사원번호 | 사원명 | 부서명 | 직급 | 월 | 지급연월 | 총급여액 | 비과세 | | | 차감원천징수세액 | | | 연금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 | | | | | 지급명세서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계 | 지급명세서작성 제외대상 비과세 소득계 | 비과세 총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
| <input type="checkbox"/> | 2021071201 | test | ERP사업본부 | 01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input type="checkbox"/> | 2021081901 | 김연별 | ERP사업본부 | 02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input type="checkbox"/> | 2022010101 | 고길동 | ERP사업본부 | 03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input type="checkbox"/> | 2022010201 | 배길수 | ERP사업본부 | 04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input type="checkbox"/> | 20220103 | 김둘리 | ERP사업본부 | 05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 | | | 06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 | | | 07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 | | | 08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 | | | 09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 | | | 10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 | | | 11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 | | | 12월 | 2022-12 | 3,000,000 | 0 | 0 | 0 | 84,850 | 8,480 | 0 | 20,000 | 11,000 | 27,000 |
| 합계 | | | | | | 36,000,000 | 0 | 0 | 0 | 1,018,200 | 101,760 | 0 | 240,000 | 132,000 | 324,000 |

메뉴 안내

- 급여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해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 [마감관리]에서 마감된 급여 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불러옵니다.
- 소득자별 급여 지급액, 비과세 금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 공제내역 등에 대하여 TAP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버튼안내

◆메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기신고일괄처리 | 메일 보내기 | 마감관리

사원명 김준본점 | 정산연도 2022 | 문서번호 222022121001

| No | 사원번호 | 사원명 | 정산구분 | 정산연월 | 신고구분 |
|----|------------|-----|-------|---------|------|
| > | 2021071201 | 김현민 | 중도퇴사자 | 2022-12 | 전자신고 |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제출 유형

유형: 연간합산제출

참고사항

2.유.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수시 분할제출을 선택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귀속연도의 전체 자료를 확인하여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 닫기

마감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고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요

| 명세 | 금액 | 비고 |
|--------------------|------------|----|
| 15-2.우려사후조합연금금 | | |
| 15-3.임원퇴직소득금액연도초과액 | | |
| 15-4.직무발명보상금 | | |
| 16.계 | 30,000,000 | |

전체: 1명 | 계속근무: 0명 | 중도퇴사: 1명 | 전자신고: 1명 | 수기신고: 0명

메뉴 안내

▪ 마감관리

- 마감관리 버튼으로 선택된 문서번호를 마감 할 수 있습니다.
- 마감된 문서번호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선택된 문서번호를 마감해야 지급명세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를 진행 할 경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메뉴로 자동이동 됩니다.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버튼안내

◆ 메뉴: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정산연도: 2022 사업장: 부서:

개인별 총분납금액

| 상태 | 금액차이 | 사원번호 | 사원명 | 사업장 | 부서 | 연말정산자료입력(차감징수세액) | | | 2월 | | | 3월 | | | 4월 | | |
|----|------|------------|-----|------|---------|------------------|--------|-----|---------|--------|-----|---------|--------|-----|---------|--------|-----|
| | | |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 |
| 대기 | 0 | 2021081901 | 김연말 | 강촌본점 | ERP사업본부 | 597,300 | 59,790 | 0 | 199,100 | 19,930 | 0 | 199,100 | 19,930 | 0 | 199,100 | 19,930 | 0 |
| 합계 | 0 | | | | | 597,300 | 59,790 | 0 | 199,100 | 19,930 | 0 | 199,100 | 19,930 | 0 | 199,100 | 19,930 | 0 |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사용방법

-대상자선정: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된 전년도 13월 계속근무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등록하고 각 월별로 분납계산됩니다.
 -분납세액계산: 연말정산자료입력이 수정된 경우 변경된 차감징수세액으로 분납세액을 계산하여 재반영합니다.
 -마감/취소: 마감을 통해 상용직급여입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등의 메뉴로 계산 한 연말정산 세액을 적용합니다

메뉴 안내

-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메뉴에서는 전년도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분납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
 1.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3. 분납기간 : 3개월
- 대상자선정
 - [연말정산자료입력(관리자)]에서 마감된 전년도 계속근무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등록하고, 각 월별로 분납계산됩니다.
- 분납세액계산
 - 연말정산자료입력이 수정된 경우 변경된 차감징수세액으로 분납세액을 계산하여 재반영합니다.
 - [근로소득연말정산입력(관리자)]메뉴에서 차감징수세액 변경시 [대상자 선정]과 [분납세액계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 마감/취소
 - 마감을 통해 상용직급여입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등의 메뉴로 계산 한 연말정산 세액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현황

◆ 메뉴: 연말정산현황

| No | 사업장 | 부서 | 사원번호 | 사원명 | 진행상태 | 내외국인 구분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계산결과 유형 | 정산구분 | 정산연월 |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 세대주여부 | 인적공제 변동 | 원천징수 세액조정 | 분납신청 |
|----|------|---------|------------|-----|-------|---------|----------------|---------|---------|-------|---------|------------|------------|-------|---------|-----------|------|
| > | 강촌본점 | ERP사업본부 | 2021071201 | 김현민 | 사용자마감 | 내국인 | 980101-2022222 | | 표준 | 중도퇴직자 | 2022-12 | 2022-01-01 | 2022-12-01 | | | 100% | ✓ |
| 2 | 강촌본점 | ERP사업본부 | 2021081901 | 김연발 | 관리자마감 | 내국인 | 951010-1234567 | | 표준 | 계속근무자 | 2022-12 | 2022-01-01 | 2022-12-31 | ✓ | | 100% | ✓ |
| 3 | 강촌본점 | ERP사업본부 | 2022010101 | 고길동 | 직업중 | 내국인 | 970601-1231532 | | | 계속근무자 | 2022-12 | 2022-01-01 | 2022-12-31 | | | 100% | |
| 4 | 강촌본점 | ERP사업본부 | 2022010201 | 백길수 | 직업중 | 내국인 | 941012-1231321 | | | 계속근무자 | 2022-12 | 2022-01-01 | 2022-12-31 | ✓ | | 100% | |
| 5 | 강촌본점 | ERP사업본부 | 20220103 | 김들리 | 직업중 | 내국인 | 801231-1312153 | | | 계속근무자 | 2022-12 | 2022-01-01 | 2022-12-31 | | ✓ | 100% | |

메뉴 안내

- 연말정산 진행내역을 전체적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자료입력메뉴의 입력된 내역을 기초정보, 입력현황, 공제현황, 공제항목별명세 등 각 TAP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현황]메뉴에서 진행상태(전체, 진행중, 사용자마감, 관리자마감, 마감취소요청, 마감취소완료) 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선택한 귀속연도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버튼안내

◆메뉴: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메뉴 안내

- 연말정산 마감된 내역을 [지급명세서전산매체] 메뉴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파일제작
 - 전자신고 파일암호 입력 후 저장할 경우 소득구분에 맞는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 홈택스제출
 - 홈택스 사이트로 자동이동 합니다.